

복지인권

2019년 5월 14일

원고를 <http://welfare.or.kr>에 한글과 PDF 파일로 공유합니다.

제1장. 인권과 사회사업	1
사회사업 인권	2
1. 인권 개념	2
2. 사회사업 인권 개념	3
3. 사회사업에서 사람답다 할 속성	4
4. 사회사업 인권의 내용	6
5. 인권을 실현하는 사회사업	8
6.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사업	12
법적 인권	13
1. 법적 인권의 개념과 내용	13
2. 법적 인권 실현의 장애 요인	15
3. 법적 인권 실현을 위한 조치	18
뒷이야기	19
1. 인권에 물 타기	19
2. 주거의 자유	20
3. 인권 실태 조사	22
4. 인권 지도 점검	23
5. 자기 결정권	24

시설 사회사업 인권 실현을 위한 선결 과제

제2장. 탈시설론	25	사고 변론	69
탈시설과 시설 사회사업	26	1. 서론	69
1. 시설	26	2. 위법성	72
2. 탈시설	27	3. 과실	77
3. 탈시설화	28	4. 책임성	79
4. 시설화와 탈+시설화	30	5. 최후 변론	81
5. 탈시설론 쟁점	36	사례	82
6. 시설 사회사업	39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82
인권위 보고서 평론	40	2. 법원 판례	84
1. 시설	40	제4장. 근무제	92
2. 탈시설	42	1. 근무제 원칙	92
3. 탈시설화	43	2. 유연한 근로시간제	93
4. 이상한 논리	47	3. 근무표 프로그램	95
5. 한마디로	48	4.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96
평론 뒷이야기	49	5. 시간외근무수당	98
1. 탈시설화 정책의 철학?	49	제5장. 인력	99
2. 밥그릇 싸움?	51	1. 둘레 사람	100
3. 시설과 활보	52	2. 개인별 맞춤 지원 조직	101
4. 탈시설 성과	55	3. 개인별 전담 실습생	102
5. 지원 인력	57	제6장. 고도 지원 대상	104
6. 소감과 희망	60	1. 사회사업적 접근	105
제3장. 사고	61	2. 기술적 접근	109
사고 대책	62	3. 영성적 접근	111
1. 법 개정	62		
2. 시설의 대비 조치	67		
3. 생활지도원이 할 일	68		

우리는 오늘도 복지인의 길을 간다.

정겨운 사람살이를 위하여

제1장. 인권과 사회사업

1. 정명

이름과 개념을 바르게 합니다.

- 1) 이름은 실제에 어울리는 이름이게 합니다. 대상의 본질이나 현상을 잘 담아내는 용어를 고르는 겁니다.
- 2) 개념은 이름과 어울리게, 주어와 술어가 호응하게, 똑떨어지는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름과 구별되게 정의합니다. 주어와 술부를 뒤집어도 말이 되게 하는 겁니다.

2. 정합성

- 1) 인권의 개념과 내용, 사회사업 실체가 가지런히 들어맞게 합니다. 서로 모순이 없을 뿐 아니라 따로 놀지 않게 하는 겁니다.
- 2) 인권의 개념과 내용이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 방법, 기관의 정체성 정책 미션 비전과도 가지런히 들어맞게 이야기합니다.

3. 실용성

- 1) 실무를 규정 통제 평가하는 효용이 있게, 실무에 당게, 구체화합니다.
- 2) 사회사업에 가당한 이야기 곧 사회사업에 비추어 그림직하고 사회사업가의 처지와 역량으로써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 3) 보통의 사회사업가가 기억하거나 체화하여 실무에 적용 평가하기 쉽게, 최종 필수 핵심만 간추려 서너 가지 이내로 짧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사업 인권

1. 인권 개념

인권은 사람다운 권리입니다.

분야에 따라

- 1) '~하는 데 사람다운 권리, 사람답게 ~할 권리' 따위로 정의하고
- 2) 해당 분야에서 사람답다 할 속성을 밝혀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1) '명사+명사' 형태의 수식 합성어를 더러 이렇게 풀이합니다. 앞 명사에 살을 붙여 뒤 명사를 수식하고, 수식어의 뜻을 풀어 구체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의 '사회'에 접미사 '적'을 붙여 '복지'를 수식하고, 수식어 '사회적'의 뜻을 풀어 '사회 속에서 이루고 누리는 복지, 사회 속에 흐르는 복지' 따위로 구체화합니다.

2) 人權은 '저울추, 저울질하다'라는 權의 뜻을 살려 '사람다움이라는 저울추에 형평을 맞춘 조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권이 온갖 분야에서 '어떤 조건을 사람다운 수준에 맞추는 저울추'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human rights는 '정당한, 타당한 것'이라는 right의 본 뜻을 살려 '사람이기에 마땅히 어찌하거나 어찌해야 하는 조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과 규약에서 무슨 권리나 자유 따위로 구체화한 인권의 내용도 대개 '사람이기에 마땅히 어찌하거나 어찌해야 한다는 조건들'입니다.

人權이든 human rights든 그 실체는 한마디로 '사람답다 할 조건들'이고 그 본질은 한마디로 '사람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권을 이런 개념으로 읽으면 뜻이 통하고 자연스러워 보이곤 합니다. 이를테면 '~하는 데 인권을 보장 실현한다 함은 ~하는 데 사람다움(사람답다 할 조건들)을 보장 실현한다, 또는 사람답게 ~하게 한다는 뜻으로 읽는 겁니다.

2. 사회사업 인권 개념

사회사업 인권은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데 사람다운 권리’입니다.

1) 일반 사회사업 인권

보통은 어떤 복지를 이루는 데 사회사업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회사업 인권은 ‘사회사업 도움으로 어떤 복지를 이루는 데 사람다운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2) 시설 사회사업 인권

시설은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 ‘사는’ 곳이라,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일이 일상적으로 사는 데까지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시설 사회사업 인권은 ‘사회사업 도움으로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며 일상적으로 사는 데 사람다운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 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려면 사회사업에서 사람답다 할 속성을 밝혀야 합니다.

사회사업에서는 어찌하거나 어떠한가 사람답다 할 수 있을까요?

복지 당사자가 사회사업 도움으로 어떤 복지를 이루는 데, 시설 입주자가 사회사업 도움으로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며 일상적으로 사는 데, 어찌하거나 어떠한가 사람답다 할 수 있을까요?

3. 사회사업에서 사람답다 할 속성

‘이래야 사람이지, 사람이니 이래야지’ 하는 속성 가운데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데 그렇다 할 속성입니다.

사회사업하기에 따라 좌우되는 속성, 사회사업으로써 잘 살릴 수 있는 속성만 이야기합니다.

1) 일반 사회사업에서 사람답다 할 속성

보통은 어떤 복지를 이루는 데 사회사업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회사업에서 사람답다 할 속성은 곧 ‘사회사업 도움으로 어떤 복지를 이루는 데’ 사람답다 할 속성입니다.

그 핵심 속성이 이러합니다.

①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할 뿐이면 이름만 사람이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어야 합니다.

②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 어울려 살기에 인간입니다. 혼자서는 인간이라 할 수 없고 존재 가치나 삶의 의미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복지를 이루는 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2) 시설 사회사업에서 사람답다 할 속성

시설은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 ‘사는’ 곳이라,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일이 일상적으로 사는 데까지 미칩니다.

따라서 시설 사회사업에서 사람답다 할 속성은 곧 ‘사회사업 도움으로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며 일상적으로 사는 데’ 사람답다 할 속성으로 확장됩니다.

그 핵심 속성이 이러합니다.

①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할 뿐이면 이름만 사람이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각각 개별적 존재로서 저마다 자기 삶을 살고자 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적으로 사는 데 저마다 각각 ‘자기 삶’이 있어야 합니다.

②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 어울려 살기에 인간입니다. 혼자서는 인간이라 할 수 없고 존재 가치나 삶의 의미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복지를 이루는 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울려 살다 보면 감당해야 할 사람 구실이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 구실을 해야 사람대접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 취급 잘 안 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적으로 사는 데 ‘사람 구실’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일반 사회사업에도 ‘자기 삶’을 살게 돕는 일이나 ‘사람 구실’을 하게 돕는 일이 아주 없다 할 수 없으나 거기까지 일상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책임이나 권한을 넘어섭니다.

4. 사회사업 인권의 내용

사회사업 인권의 내용은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데 어찌하거나 어떠한 권리들’입니다.

사회사업에서 사람답다 할 속성으로써 구체화하되, 보장할 주된 책임과 권한이 사회사업가에게 있는 권리만 이야기합니다.

1) 일반 사회사업 인권의 내용

앞서 밝힌 ‘일반 사회사업에서 사람답다 할 속성’만 적용하여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합니다.

①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될 권리

자기 복지에 관한 일에 설명을 들을 권리, 선택하거나 동의 또는 거절할 권리, 주체로 참여할 권리입니다.

② 복지를 이루는 데 사람들과 어울릴 권리

복지를 이루는 데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을 비롯한 둘레 사람과 어울릴 권리,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을 이용하며 사람들과 어울릴 권리입니다.

2) 시설 사회사업 인권의 내용

앞서 밝힌 ‘시설 사회사업에서 사람답다 할 속성’을 모두 적용하여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합니다.

①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될 권리

자기 복지에 관한 일에 설명을 들을 권리, 선택하거나 동의 또는 거절할 권리, 주체로 참여할 권리입니다.

② 자기 삶을 살 권리

더디고 힘들고 어설피고 부족하고 불편하고 위험할지라도, 그래도 저마다 나름대로 자기 희망 계획 필요에 따라 살 권리입니다.

③ (사람 구실을 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살 권리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으로 사람들과 어울려 살 권리, 나아가 지역 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을 이용하며 지역 주민 시민으로 사람들과 어울려 살 권리입니다.

시설 사회사업 부문의 인권 가운데 ‘입주자 인권’이 이리합니다.

시설 종사자 인권은 ‘2014. 11. 20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한국장애인 복지시설협회 정보마당 협회자료실에 보고서 파일이 있습니다.

5. 인권을 실현하는 사회사업

1) 일반 사회사업에서의 인권 실현

복지 당사자를 사람답게 돕는다는 말입니다.

당사자는 복지를 이루는 데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복지를 이루는 데 어떤 도움을 얼마나 받든 ‘사람’입니다.

어찌해야 사람답게 돕는다 할 수 있을까요?

①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당사자가 다 하기 어려우면 과업을 세분하고 단계를 나누어 우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같이 하거나 대신 해 주되 당사자가 알고 동의하거나 요청하는 ‘당사자의 일’이게, 당사자의 일에 심부름하는 모양새이게 합니다.

②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와 둘레 사람이 함께하게, 당사자와 둘레 사람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지역사회 사람들과 어울려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복지 수단을 이용하게, 당사자와 일반 복지 수단 쪽 사람들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2) 시설 사회사업에서의 인권 실현

입주자를 사람답게 돕는다는 말입니다.

입주자는 시설 조직과 계약하고 시설 주택에 입주한 사람입니다.

계약에 따라 일상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습니다. 계약 조건이 어떠한 어떤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든 입주자는 ‘사람’입니다.

어찌해야 사람답게 돕는다 할 수 있을까요?

일반 사회사업에서 ‘사람다움’은 사회사업 도움으로 어떤 복지를 이루는 데 사람답다 할 속성입니다. 따라서 일반 사회사업은 어떤 복지를 이루는 ‘그때 그 일에서’ 사람답게 도움 뿐입니다.

시설은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 ‘사는’ 곳이라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일이 ‘일상적으로 사는 데’까지 미치고 따라서 사람답게 도와야 할 일도 그만큼 더 확장됩니다.

시설 사회사업은 입주자가 사람답게 복지를 이룰 뿐 아니라 사람답게 ‘살게’ 돕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며 저마다 ‘자기 삶을 살게’ 돕는다는 말이고 이런저런 ‘사람 구실을 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는다는 말입니다.

입주자를 ‘사람’이라 하는 뜻이 이러합니다.

이와 같이 입주자를 사람으로 보고 사람답게 돕는 사회사업의 실체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습니다.

당사자의 일, 이를테면 청소 세탁 취사 요리, 세면 양치 목욕, 여행 산책 운동, 생일잔치, 교제, 쇼핑 구직 자취, 취미 활동 따위에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당사자가 다 하기 어려우면 과업을 세분하고 단계를 나누어 우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하고 나머지는 같이 하거나 대신 해 줍니다.

대신 해 줄 때는 당사자가 알고 동의하거나 요청하는 ‘당사자의 일’이게, 당사자의 일에 심부름하는 모양새이게 합니다.

대신 다 해 주게 되더라도 그래도 당사자가 자기 일로 여기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② 자기 삶을 살게 돕습니다.

더디고 힘들고 어설피고 부족하고 불편하고 위험할지라도 그래도 저마다 자기 삶을 살게 돕습니다.

저마다 각각 개별적 존재로서 나름대로 자신의 희망 계획 필요에 따라 살아가게, 나름대로 하는 일이나 즐기는 것이 있게 돕는 겁니다.

단체 생활이 일상화한 시설의 입주자에게 자기 삶이라는 게 있을까요? 사고 나지 않게 보호 통제하는 시설의 입주자가 자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기 삶을 살아 보기는커녕 자기 삶을 꿈꾸지도 원하지도 않는다면, 서비스에 순응 안주하여 편하고 재미있고 안전하게 연명할 뿐이라면,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산다 할 수 있을까요?

③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으로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기회를 만들어서, 연락하고 초대하고 방문하고 문안 축하 위로 격려 응원 칭찬 감사 선물하고 도와주고,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놀고 쇼핑하고 공연 영화 보고 여행하고...

이렇게 둘레 사람과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둘레 사람의 일로 입주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입주자의 일로 둘레 사람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나아가 지역 주민 시민으로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을 이용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소통이 다양 풍성해지고 평범해지고 자연스러워지게 합니다.

④ 사람 구실을 하게 돕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대하여, 마땅하거나 바람직한 노릇을 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자식 노릇, 부모 노릇, 어른 노릇, 친구 노릇, 집주인 노릇, 직원이나 동료 노릇, 회원 노릇, 지역 주민 시민 노릇 같은 사람 구실을 잘하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입주자를 사람으로 보고 사람답게 돕는 사회사업, 입주자의 인권을 실현하는 사회사업의 실체가 이리합니다.

6.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사업

1) 일반 사회사업에서의 인권 침해

- ①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그저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 ② 돌레 사람과 함께하게 돕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일반 복지 수단을 이용하게 돕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돌레 사람과 멀어지고 지역사회와 분리됩니다.

2) 시설 사회사업에서의 인권 침해

- ①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그저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 ② 입주자를 집단으로 움직이거나 지나치게 보호합니다. 입주자가 자기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 ③ 돌레 사람과 함께하게 돕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일반 복지 수단을 이용하게 돕지 않습니다. 입주자가 돌레 사람과 멀어지고 지역사회와 분리됩니다.
- ④ 사람 구실을 하게 돕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입주자를 환영하거나 사람대접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거나 보호 대상자, 후원 봉사 대상자쯤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법적 인권

1. 법적 인권의 개념과 내용

법적 인권은 법으로 보장하려는 권리입니다.

그 가운데 장애인 시설 입주자를 위한 사회사업에 특히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사업 인권과 상통합니다.

1)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②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사생활 및 자기 결정권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③ 시설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 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자기 결정 및 선택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 자유롭게 이동·거주할 권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③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둘레 사람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⑤ 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을 이용할 권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하여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법적 인권 실현의 장애 요인

1) 보호 의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3호에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금지한다 하고 이런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니다.

이런 무한정한 보호 의무가, 이로 인한 보호 행위가, 입주자의 사생활 및 지역사회생활 같은 법익을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합니다.

2) 사고 걱정

사회사업 인권이든 법적 권리든, 시설 입주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노력은 대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곤 합니다. 사고 뒷일이 사람을 힘들게 지치게 질리게 합니다.

그래서 더러는 입주자를 지나치게 ‘보호’하게 됩니다. 이런 시설의 입주자는 사람다운 권리, 사람답게 살 권리를 누리지 못할 겁니다.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움직이며 하릴없이 그저 ‘연명’이나 하는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겁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3호

보호 대상, 기본적 보호,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한정이 없습니다. 사고가 났다 하면 어느 시설 누구라도 이로 인해 시비 문책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 사회사업에, 입주자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그야말로 암초요 텃이요 족쇄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제3호에 의한 주의 내지 보호 의무를 엄격히 요구하면, 입주자 개개인의 삶과 사람살이를 위한 지원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같은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권익을 보장 실현하려는 일에는 얼마쯤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는 데, 이런 일의 위험을 예견 회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죄를 적용한다면 결국 저마다 자기 생활을 하는 입주자 개개인의 삶,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사람살이는 지원하기 어려울 겁니다.

시설에 주의의무를 포괄적으로 요구하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3호의 ‘기본적 보호’의 범위나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시설의 주의나 보호란 사실상 간섭 통제나 구속에 가까워질 것이고 따라서 시설은 사실상 수용소나 다름없게 되고 말 겁니다.

안전 이외의 다른 법익을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보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 보호 대상자?

1) 시설 입주자는 다 보호 대상자인가?

어떤 입주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보호가 얼마쯤 필요할 뿐인데 시설 입주자를 다 보호 대상자 취급함은 온당치 않습니다.

사회사업에서 약자라 함은 상황적 약자 곧 약한 상황 ‘그때 그 일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시설 입주자가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모든 일에 항상 같은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 그때 그 일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상황 다른 때 다른 일에서도 그런 것처럼, 항시 약자나 종합 대상자인 것처럼, 온갖 일에 도와주려 하거나 지도 교육 ‘보호’ 통제 관리하려 들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성인은 더욱 그러합니다.

2) 보호가 필요한 사람 상황 사안을 특정하지 않고, 필요 이상의 보호를 삼가지 않고, 입주자 자체가 보호 대상인 양 규정하거나 온갖 일에 보호하려 드는 잘못...

입주자에 대한 인식에, 입주자의 삶에, 시설 사회사업과 입주자 인권 실현에, 이보다 나쁜 게 있을까요?

장애인복지법 제86조(별칙) ④ 장애인복지시설 임직원이나 관계 공무원으로서 불특정 장애인에 대해 보호 운운하거나 특정 장애인에 대해 상황·사안을 가리지 않고 보호 운운하는 자는 1주 이내의 치료감호나 1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에 처한다. ⑥

3. 법적 인권 실현을 위한 조치

1) 시설 홈페이지와 홍보물, 운영지침이나 운영계획서에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하는 지원 원칙과 방법을 명시합니다.

이를 위해 최대한 당사자가 하게 돕고, 둘레 사람과 함께하게 돕고,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을 이용하게 돕는다고 기술합니다. ‘보호’ 조치는 위와 같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하기 쉬우니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로 최소한으로 한다고 기술합니다.

2)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보호’ 행위를 최대한 명시하여 금지하고 또 ‘기타 필요 이상의 보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기술합니다.

3) 입주 계약서와 개인별 지원계획서에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노력이 자칫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최소한의 필수 보호 조치를 합의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사고가 났을 때 위법성 조각 사유 곧 ‘업무에 의한 정당행위’ 또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변론할 수 있습니다. 사고 뒷일 걱정을 덜고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뒷이야기

1. 인권에 물 타기

사회사업 인권의 본질, 사회사업 인권 침해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사회사업에서 어찌하면 사람답지 않다 하는가, 어찌되면 사람이라 할 수 없는가? 하는 겁니다.

예컨대

폭행당하면 사람이 아닌가?

착취당하면 사람답지 않다 할 수 있는가?

차별받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는가?

주는 대로 먹거나 시키는 대로 할 뿐이면?

자기 삶이 없고 그저 연명할 뿐이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사람 구실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따져 보면 무엇이 인권 침해의 본질인지 자명해집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주로 폭행 폭언 방임 학대 모욕 협박 차별 따돌림 착취 감금 속박 따위를 문제 삼음으로써 ‘더 중한 인권 침해를 가리고 인권의 본질을 흐리는’ 일부 인권 운동과 실태 조사니 지도 점검이니 하는 행태가 유감하고 민망합니다.

2. 주거의 자유

1) 시설의 방실은 입주자가 적법하게 점유한 주거 공간입니다.

이곳에서의 ‘주거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거란 사람의 현재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일체의 설비를 말한다. 주택·아파트가 대표적인 것이나, 이에 한하지 않고 회사의 사무실이나 점포,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여관·호텔의 객실, 야외용 천막 안 등도 포함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거의 자유’ (두산백과)

① 시설은 주택입니다.

시설 주택이 어디에 있든, 규모나 형태가 어떠하든, 한집 한방에 몇 명이 살든, 여느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거의 자유’가 있는 각 입주자의 집입니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고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수색할 수 없습니다.

② 시설은 사회주택입니다.

사회가 마련하여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어떻게 마련하고 어떤 조건으로 제공하든 여느 사회주택과 마찬가지로 ‘주거의 자유’가 있는 각 입주자의 집입니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고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수색할 수 없습니다.

③ 시설은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 사는 사회주택입니다.

여느 사회주택과 마찬가지로 입주 자격이 있는데 시설은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입주합니다. 어떤 도움을 얼마나 받든 ‘주거의 자유’가 있는 각 입주자의 집입니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고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수색할 수 없습니다.

2) 약속이나 허락도 없이 남의 집이나 방에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시설 입주자의 집이나 방은 그래도 괜찮을까요? 입주자가 그런 꼴 당하고도 어쩔 수 없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갈 데 없는 사람이라면…

여느 사람에게도 못하지만 이런 약자에게는 더욱 못할 것입니다.

그 집이나 방의 담당 직원이 아니라면 다른 직원은 물론이고 시설장도 삼갈 일입니다. 다른 집 다른 방 입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 직원이 안내해도 그곳 입주자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허락하더라도 삼갈 일입니다.

외출했다면, 아무도 없으니 둘러보아도 괜찮을까요?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는 일이라니…

몰려다니며 구경하듯 살피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거든 이리저리 둘러보지 말며 기물을 함부로 만져 보지 말라 했습니다. 방 문틈이나 창문으로 들여다보아서도 안 됩니다. 남의 집 담이나 벽이 비록 허술해도 엿보지 말라 했습니다.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인권 실태 조사

약속도 없이 쳐들어와서 다짜고짜 오라 가라 하다니... 개도 아무한테나 가지는 않는데...

당사자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시간 좀 내 달라고 정중히 부탁하지 않아도, 약속하지 않아도, 아무 때나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걸까요? 시설 입주자한테는 그래도 괜찮다는 걸까요?

여느 사람에게도 이럴 수 없지만 이런 꼴 당하고도 어쩔 수 없는 사람에게는 차마 못할 짓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례하고 부당한 처사인지 항의는커녕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입주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듯 무시 능멸하는 처사입니다. 한두 번 타이른 후에 듣지 않으면 내쫓거나 그저 무시할 일입니다.

조사단 편의대로 들이닥쳐 ‘불러다 조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러다 대령시킨다면 이는 입주자를 팔아먹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영장 없이 입주자의 방실에 들어가거나 입주자의 신체 통장 컴퓨터 사물함 서랍 장롱 따위를 손대거나 들여다보게 해서도 안 됩니다.

참조 : 20쪽 ‘주거의 자유’ - 형법 제319조, 제320조

조사단의 협조 요청을 입주자에게 설명하고 부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입주자가 불일 보고 나서 시간과 여력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는 입주자, 강요로 느끼지 않고 자유의사로 선택할 수 있는 입주자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원문 : 정보원 카페 복지요결 게시판 [355](#)번 ‘인권 실태 조사 유감’

참고 : 같은 게시판 [357](#)번 글 ‘시설 견학 시험, 입주자 선거실태 조사단 방문’

4. 인권 지도 점검

1) 사람은 자기 복지를 이루는 데 제구실, ‘주인 노릇’ 해야 합니다.
사람은 둘레 사람에게 사람 구실, ‘사람 노릇’ 해야 합니다.

2)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싶어 하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자존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 본능에 가까운 기본 욕구입니다. 이는 대개 제구실, 사람 구실 따위의 가치 있는 구실을 할 때 충족됩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라도 어떤 구실을 하려 합니다. 자기 복지를 이루는 데 기여하거나 남을 도와줄 때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렇게 제구실하거나 사람 구실을 할 때 당당합니다.

대상화하여 받기만 하는 사람, 구실을 잃은¹ 빼앗긴 사람에게서는 당당함이나 생기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3) 입주자가 입주자의 것으로써 여느 사람처럼 자기 일상생활과 인간 관계 속에서 ‘제구실, 사람 구실’ 하게 돕는데 시비합니다. 노동력 착취니 금품 갈취니 하며 입주자가 자의로 선의로 하겠다는 일조차 돕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이들의 의식과 행태가 종종 유감하다 못해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마땅하거나 바람직한 구실을 살려 도우려는 인권 실현 노력을 저해하고 입주자의 자존 욕구를 억압하는, 그야말로 반인권적인 처사입니다.

입주자 가족이나 감독관청이 요구한다고 그저 따를 일이 아닙니다.

제구실, 사람 구실을 하며 사람답게 살게 도우려는 뜻을 잘 설명하고 그렇게 돕는 일의 실체가 어떠한지 보여 주어야 합니다.

5. 자기 결정권

1) 사회사업은 복지 당사자와 사회사업가가 상관하는 일입니다. 둘레 사람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관련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일방이 결정할 수 있을까요?

2)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없는 일이라면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타인에게 손해 불편 부담 책임을 초래하지 않는 일이라면 당사자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사업 안에서’ 당사자 일방이 결정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보장할 책임과 권한이 사회사업가에게 있다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사회사업 안에서 당사자의 자기 결정은 권리보다 책임 또는 과업에 가깝습니다. 당사자가 무엇을 결정할 때 사회사업 도움이 필요하여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요청하면 사회사업가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두루 알아보고 둘레 사람과 의논해 보고 스스로 검토 궁리하여 잘 판단 선택 결정하게 돕는 겁니다.

3) 사회사업가는 당사자의 일을 당사자와 의논하지 않고 당사자의 동의나 요청 없이 대신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결정하는 대로 그저 따를 수도 없습니다. 기관의 정책과 형편, 자신의 역량과 권한과 책임, 자원과 기회비용, 당사자나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따위를 헤아려 의논해야 합니다.

사회사업은 복지 당사자와 사회사업가가 서로 의논하여 복지를 이룹니다. 어느 쪽도 혼자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사회사업 안에서 무엇을 결정하는 데 상대방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 수는 있어도 본인이 결정하는 대로 그저 따르라고 요구할 권리는 어느 쪽에도 없습니다.

제2장. 탈시설론

1. 정명

이름과 개념을 바르게 합니다.

- 1) 이름은 실제에 어울리는 이름이게 합니다. 대상의 본질이나 현상을 잘 담아내는 용어를 고르는 겁니다.
- 2) 개념은 이름과 어울리게, 주어와 술어가 호응하게, 똑떨어지는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름과 구별되게 정의합니다. 주어와 술부를 뒤집어도 말이 되게 하는 겁니다.

2. 정합성

- 1) 탈시설 개념과 내용, 사회사업 실체가 가지런히 들어맞게 합니다. 서로 모순이 없을 뿐 아니라 따로 놀지 않게 하는 겁니다.
- 2) 탈시설 개념과 내용이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 방법, 기관의 정체성 정책 미션 비전과도 가지런히 들어맞게 이야기합니다.

3. 실용성

- 1) 실무를 규정 통제 평가하는 효용이 있게, 실무에 당게, 구체화합니다.
- 2) 사회사업에 가당한 이야기 곧 사회사업에 비추어 그림직하고 사회사업가의 처지와 역량으로써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 3) 보통의 사회사업가가 기억하거나 체화하여 실무에 적용 평가하기 쉽게, 최종 필수 핵심만 간추려 서너 가지 이내로 짧게 이야기합니다.

탈시설과 시설 사회사업

1. 시설

1) 탈시설을 논하려면 먼저 시설 개념을 밝혀야 합니다.

주어와 술어가 호응하게 “시설은 OO입니다.” 이렇게 똑떨어지는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시설 아닌 것과 구별되게 하고, 시설을 어지간히 아우를 수 있게 합니다.

2) 시설은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 사는 사회주택입니다.

예컨대 장애인 시설은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들어 사는 사회주택입니다.

이런 시설을 관리하며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조직도 시설이라 합니다.

Institution = Residential Facilities + Supporting Organization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 거주시설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에서

① 거주공간은 ‘사회주택’입니다.

②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은 ‘조직’입니다.

흔히 이 조직의 주 사무소 주소지 안에 있는 주택 ‘원내 주택’을 가리켜 시설이라 합니다.

③ 입주자는 시설 조직과 계약하고 시설 주택에 입주한 사람입니다.

2. 탈시설

탈(脫) :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그것을 벗어남’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예컨대 탈옥에서 ‘탈’은 그 곳에서 나간다는 뜻이다, 탈수에서 ‘탈’은 그것을 없앤다, 탈냉전에서 ‘탈’은 그 상태를 바꾼다는 뜻이다.

탈시설은 ‘시설을 벗어나기’입니다. 시설에서 나간다는 뜻입니다, 시설을 없앤다, 시설의 어떤 상태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1) 물리적 탈시설

물리적 탈시설은 ‘시설에서 나가기’ 또는 ‘시설을 없애기’입니다.

① 시설에서 나가기 : 시설 밖으로 나가 산다는 뜻입니다. 시설 입주자로서 시설 밖으로 나가 살거나 시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 밖으로 나가 사는 겁니다.

② 시설을 없애기 : 시설 입주를 막고 신규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기존 시설 입주자를 나오게 하고 시설을 폐쇄·폐지한다는 뜻입니다.

2) 기능적 탈시설

기능적 탈시설은 ‘시설 생활상을 바꾸기’입니다.

집단으로 움직이는 행태 ‘단체 생활’을 벗어나 독립생활 곧 저마다 따로 자기 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른 입주자와 함께 집단으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독립생활은 시설 주택에 살든 일반 주택에 살든 여럿이 살든 혼자 살든 생활지도원 도움을 받든 활동지원사 도움을 받든, 따로 자기 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능적 탈시설의 실상은 한마디로 ‘독립생활하기’입니다.

3. 탈시설화

탈시설화는 탈시설하게 또는 탈시설되게 하는 일입니다.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기 전에 시설이 할 ‘탈시설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리적 탈시설화 : 주거 지원의 단계적 확대

물리적 탈시설화는 ‘시설에서 나가게 하기, 시설이 없어지게 하기’입니다.

다만 시설이 나서서 입주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내보내거나 시설을 없애기는 어려운 노릇이라, 시설이 감당할 물리적 탈시설화는 결국 ‘입주자의 시설 밖 주거를 지원하기’로 정리됩니다.

입주자의 시설 밖 주거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지원하되 입주자의 욕구와 역량, 시설 형편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갑니다.

- ① 원외 가구 거주 : 시설이 밖에 마련한 주택에 거주하게 돕습니다.
- ② 외박 : 때때로 시설 아닌 곳에서 하루 이틀이나 며칠 지내다 오게 돕습니다. 명분과 기회, 횟수와 기간을 늘려 갑니다.
- ③ 더부살이 : 결연 가정, 위탁 가정, 친지 가정에서 지내게 돕습니다.
- ④ 판살림 : 좋은 집주인, 좋은 이웃이 있는 곳에서 자취하게 돕습니다. 시설이 책임지고 지원합니다.
- ⑤ 본가살이 : 본래 살던 집이나 가족의 집에 거주하게 돕습니다. 시설이 책임지고 지원합니다.

입주자는 시설 밖에서도 일상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시설로 돌아오거나 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기능적 탈시설화 : 생활 단위의 단계적 축소

가구는 ‘독립적 생활 단위’입니다. 가구마다 따로 생활합니다.

주거 공간이 시설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집 한 채나 방 하나를 단독으로 쓰든 다른 가구와 함께 쓰든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적 탈시설화는 이와 같이 독립생활하게 돕는 겁니다.

입주자의 욕구와 역량, 시설 형편에 맞게 단계적으로 생활 단위를 축소해 갑니다.

① 동이나 층

시설 주택이 여러 동이나 층으로 되어 있으면 동이나 층을 각각 독립시설처럼 운영합니다. 동이나 층별로 따로 생활하게 돕는 겁니다.

② 집

집이 여러 호 있으면 집마다 각각 독립 가구로 봅니다. 다른 집과 함께 집단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룹홈과 마찬가지로 집마다 따로 생활합니다.

③ 방

방이 여러 개 있으면 방마다 각각 독립 가구로 봅니다. 다른 방과 함께 집단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독채를 쓸 형편이 아니어서 방 하나를 쓸 뿐인데 그렇다고 한 가구는 아닙니다.

④ 개인

입주자마다 각각 독립 가구로 개별화하여 돕습니다. 얼마쯤 한계가 있지만 저마다 따로 자기 생활을 하게 돕습니다. 한집 한방에 산다고 다른 입주자와 함께 집단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시설 입주자는 대개 남남이라, 한집 한방에 동거한다고 한 가구는 아닙니다.

4. 시설화와 탈+시설화

이른바 ‘시설화’에서 시설은 ‘수용시설’입니다.

당사자가 들어 사는 곳이 아니라 대상자를 수용 보호하는 곳, 입주자나 거주자가 아니라 입소자나 피수용자인 곳, 저마다 자기 생활을 하는 입주자의 집이 아니라 집단으로 움직이며 관리 통제하는 집단 수용소… 이와 같은 수용시설로 인하여 시설화를 이야기합니다.

시설화는 수용시설화, 곧 지원 방식과 생활상이 수용시설처럼 되는 현상입니다.

입주자를 집단으로 움직이며 보호 관리 통제하는 행태를 띠게 되고 그로 인해 입주자가 자기 삶 자기 생활을 내려놓고 둘레 사람과 멀어지고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시설화는 시설의 고유한 특성이 아닙니다. 시설에 오래 산다고 생기는 현상도 아닙니다.

지원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컨대 인력, 예산, 정부 정책, 감독기관의 요구, 가족 상황, 지역사회 여건, 철학 따위가 부적절하여 생기는 현상이지 시설이라는 존재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을 없애거나 시설에서 나가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탈+시설화는 시설화를 벗어나기입니다.

시설의 일로서 ‘탈+시설화’는 지원 방식의 시설화를 벗어나기입니다.

시설화한 지원 방식을 바꾸고 지원 방식이 시설화하지 않게 하면 입주자도 생활상의 시설화를 벗어나게 됩니다.

시설화의 실상과 탈시설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화는 입주자를 집단으로 움직이며 단체 생활 시키는 현상입니다.

입주자가 단체 생활에 순응 안주하여 개별적 존재로서 자기 생활을 추구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현상입니다.

시설 생활은 곧 단체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입주자를 단체로 움직이는 일이 있습니다.

시설 입주자는 단체 생활 시켜도 된다는 듯, 단체로 관리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듯, 단체 생활이 이상할 게 없다는 듯...

수시로 집단 활동을 벌입니다. 프로그램이라는 미명하에 집단 활동을 아예 대놓고 일상화하기도 합니다. 집합시키거나 동원하는 일도 있습니다. 먹고 자고 움직이는 시간을 공통 일과표에 맞추기도 합니다.

입주자가 집단 활동 프로그램이나 공통 일과표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 생활이 그렇게 유도 규정 통제되기 쉽습니다. 저마다 각각 자기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습니다.

탈+시설화는 '입주자가 독립생활하게 돕기'입니다.

집단으로 움직이는 행태 '단체 생활'을 벗어나 각각 개별적 존재로서 저마다 따로 자기 생활을 하게 지원하는 겁니다. 한집 한방에 산다고 다른 입주자와 함께 집단으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2) 시설화는 입주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입주자가 자기 삶을 살지 못하거나 체념 포기하게 되고 더러는 자기 삶이라는 걸 생각지 못하거나 원하지도 않게 되는 현상입니다.

안전과 책임을 강조하다 보면 단순 케어와 보호 또는 시설 내에서의 집단 활동 프로그램이나 단체로 나가는 활동 외에 개개인의 삶을 위한 지원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같은 법의 보장을 위한 책무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자의 인권이나 법의 실현을 위한 노력, 입주자가 저마다 자기 삶을 살게 하는 일은 모두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곤 합니다. 사고 날 위험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주의 및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서 사고 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겁니다. 사고 뒷일이 사람을 힘들게 지치게 질리게 합니다.

이런 시비나 책임을 면피하려다 보면 입주자를 지나치게 ‘보호’하게 됩니다. 보호 행위는 사실상 간섭 통제 구속에 가까워지고 시설은 결국 ‘감옥’ 같은 곳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설의 입주자는 ‘자기 삶’이 없고 그저 안전하게 ‘생존 연명’하게 될 뿐입니다.

시설의 인권 침해, 시설화의 본질, 그 핵심은 입주자를 지나치게 ‘보호’함으로써 결국 ‘입주자의 삶’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탈+시설화는 ‘입주자가 저마다 자기 삶을 살게 돕기’입니다.

입주자가 저마다 나름대로 자신의 희망 계획 필요에 따라 살아가게, 저마다 나름대로 하는 일이나 즐기는 것이 있게 돕는 겁니다.

3) 시설화는 입주자의 주거가 사실상 시설에 한정 고정되는 현상입니다.

헌법 제14조 :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 자유를 누리는 데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입주자가 많습니다. 이런 입주자는 사회사업가가 적극 지원하지 않으면 하릴없이 그저 시설에 붙박여 살아야 하니 간혀 사는 것이나 다름없을지 모릅니다. 주거를 적극 지원하지 않음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사실상 제한하고 입주자를 구속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느 사람은 직장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얻어 살기도 합니다. 얼마간 고향집이나 자식 집에 가서 지내기도 합니다. 친척 집이나 친구 집에 며칠 다녀오기도 합니다. 연휴 방학 휴가 때 다른 데서 얼마간 지내기도 합니다. 입주자가 여느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싶다 한들 사회사업가가 그에 맞게 주거를 지원할 생각이 없거나 방법을 찾아보지 않는다면 어찌겠습니까?

‘거주시설’이라 하니 주거 지원은 그 시설에 한정될 것 같습니다. ‘거주자’라 하니 그 시설에 거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시설의 거주자는 전입할 때부터 퇴거할 때까지 거의 그 시설에서 지냅니다. 명절에 고향집 다녀오거나 집단 활동으로 외박하는 일 외에 다른 곳에서 지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주거가 한정되는 겁니다. 시설에 붙박여 살게 되는 겁니다.

탈시설자나 탈시설 운동가들이 시설을 ‘감옥’으로 표현하곤 하는데, 주거가 시설에 한정 고정되는 현상과 상당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

탈+시설화는 ‘입주자의 주거를 다양하게 지원하기’입니다.

입주자의 욕구와 역량,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따라 시설 밖에서 지낼 수 있게 지원하는 겁니다.

4) 시설화는 입주자가 자기 일에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하지 않고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대신 해 주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입주자가 하릴없이 그저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하는 현상,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조차 해 주기를 바라고 의존하려 드는 현상입니다.

탈+시설화는 ‘입주자가 자기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기’입니다.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가 이루게 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다 하기 어려우면 과업을 세분하고 단계를 나누어 우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하고 나머지는 같이 하거나 대신 해 줍니다.

대신 해 줄 때는 당사자가 알고 동의하거나 요청하는 ‘당사자의 일’이게, 당사자의 일에 심부름하는 모양새이게 합니다.

5) 시설화는 입주자를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로부터 따로 떼어 돕는 현상, 이로 인해 입주자가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① 입주자가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는 데 돌레 사람이 함께하게 주선하지 않고 돌레 사람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까지 시설이 대신 해 주곤 합니다. 입주자가 돌레 사람에게 ‘사람 구실’ 하게 돕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자가 돌레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소외되고 잊혀 갑니다. 돌레 사람에 대하여 사람 구실을 하지 않으니 사람대접은커녕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존재 가치나 삶의 의미를 잃어 갑니다.

② 지역사회 일반 수단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하지 않고 입주자 전용 수단으로써 복지를 이루어 줍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일반 복지 수단 쪽 사람들이 입주자를 외면 기피 배제 차별하게 됩니다. 후원 봉사 대상자쯤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취급하기 십상입니다. 입주자가 지역 주민 시민으로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기 어려워지고 사회로부터 멀어집니다.

탈+시설화는 ‘입주자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기’입니다.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으로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돌레 사람의 일로 입주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입주자의 일로 돌레 사람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지역 주민 시민으로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을 이용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게 돕는 겁니다.

나아가 ‘사람 구실’ 하며 살게 돕습니다. 어울려 사는 관계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으로 인정받고 사람으로 존중 환영받을 만한 일을 하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5. 탈시설론 쟁점

1) 지역사회에서 산다?

지역사회 개념이랄 게 없을 뿐 아니라 특정하여 가리키는 바도 없는 것 같은데… 그저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한다 합니다. 지역사회 거주니 지역사회 복귀니 지역사회로의 전환이니 합니다.

시설과 지역사회가 상호 배타적 관계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시설 주택은 지역사회 주택이 아니고 시설에 살면 지역사회에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지역사회 안에 시설이 있으니 시설 주택도 지역사회 주택입니다.

도심에 있든 산속에 있든, 몇 집 몇 가구로 되어 있든, 한집 한방에 몇 명이 살든, 공간이나 세간을 따로 쓰든 함께 쓰든, 시설도 여느 주택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주택입니다.

지역사회에는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공간이나 세간을 여러 가구가 얼마쯤 공유하는 주택도 있습니다. 방만 따로 쓰는 ‘기숙사형 생활주택’이 그러하고 한집 한방에 서로 다른 가구들이 동거하는 ‘공유주택’이 그러합니다.

시설 주택도 여느 주택과 마찬가지로 그 위치나 규모나 형태가 다양합니다. 다만 시설 주택이나 여느 주택이나 지역사회 주택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 거주한다는 사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에는 시설 주택과 지역사회 여느 주택 또는 일반 주택이 있을 뿐이고, 거주지라면 시설 안과 밖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시설 주택과 지역사회 주택’, ‘시설 거주와 지역사회 거주’ 따위로 구분하거나 그렇게 대비할 수 없습니다.

2)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생활을 위해서 탈시설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통합이나 자립생활은 어떻게 돕는가에 달린 문제입니다. 사는 곳이나 지원 인력에 달렸다 할 게 아닙니다. 일반 주택에 살면 된다거나 활동지원사가 잘 도울 수 있다 할 게 아닙니다.

① 지역사회 통합이 ‘사는 곳’에 달렸다 할 수 있을까요?

일반 주택에 산다고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을 이용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시설 주택에 산다고 이렇게 살지 못한다 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을 이용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습니다. 지원하기 나름입니다.

② 자립생활이 ‘사는 곳’에 달렸다 할 수 있을까요?

일반 주택에 살아도 활동지원사 도움을 비롯한 각종 지원에 의존하니 자립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일반 주택이라도 혼자 사는 게 아니면 ‘독립생활’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러는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자주생활’조차 못할 수 있습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시설 주택에 살아도 자립생활은 어렵습니다. 다만 입주자마다 각각 독립 가구로서 따로 생활하는 ‘독립생활’과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는 ‘자주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기 나름입니다.

③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생활, 활동지원사가 잘 도울 수 있을까요?

고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활동지원사가 맡으면 그저 보호 수발하는 정도일 겁니다.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생활까지 도와주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사람을 기피할 겁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더러는, 활동지원사가 있어 둘레 사람이 멀어지기도 하고 제 할 일조차 활동지원사에게 미루거나 활동지원사를 배려하여 자기 삶을 얼마쯤 내려놓기도 합니다.

실정이 이러한데, 사는 곳이나 지원 인력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생활 여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생활을 구실로 시설에서 나와야 한다거나 시설을 없애야 한다 하니 참으로 괴이하고 민망한 이야기입니다.

3) 시설을 없애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생활이 목적이라면 어디서든 그렇게 돕게 하고, 시설 운영 행태나 지원 방식이 문제라면 고치게 하고, 인권 침해나 비리가 문제라면 처벌할 일 아닌가요?

시설을 없애야 한다 하려면 그에 맞는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과거 시설이나 일부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시설에 대하여 그 존재 자체가 부당함을 밝혀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역사회 통합이나 자립생활, 인권 침해나 비리는 운영 방식이나 지원 방식에 달린 문제인데 이를 내세워 시설 자체를 없애야 한다 함이 온당한 주장일까요?

이런 식으로 시설을 부정하고 몰아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시설의 구실과 협력을 배제한다면, 탈시설은 물론이고 탈시설 후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생활, 인권 실현’이 더디고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6. 시설 사회사업

인권단체 자립생활센터 부모연대 탈시설자 입주자... 너도나도 탈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까지 나서서 탈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시설 사회사업가는 어찌할까요?

시설에서 나가겠다는 등 시설을 없애라는 등 누가 뭐라 하든지
커뮤니티 케어니 사회서비스원이니 하는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든지
탈시설이라고 하든지 다른 용어로 표현하든지
탈시설화를 ‘탈시설+화’로 보든지 ‘탈+시설화’로 보든지...

아무튼 시설 사회사업가는

- 1) 입주자가 저마다 각각 독립생활하게 돕습니다.
- 2) 입주자가 자기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고 저마다 각각 자기 삶을 살게 돕습니다. 사람 구실을 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내일 시설의 종말이 온다 해도

시설 사회사업가는 오늘 입주자를 이렇게 돕습니다.

떠날 사람이라면 더욱 이렇게 돕습니다.

떠날 날이 가까울수록 더더욱 이렇게 돕습니다.

떠나서도 이렇게 돕는 사람 만나 이렇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당신의 일상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제구실 사람 구실 내려놓지 않고 더욱 버젓하게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며 지역사회 여느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기 바랍니다.

인권위 탈시설 방안 연구 보고서 평론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연구 - 2017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1. 시설

본 보고서는 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보고서에서 말하는 '시설'은 장애인이 집단 또는 공동으로 거주하는 복지시설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거주시설과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집단거주가 이뤄지는 복지시설. 11쪽

1) 보고서가 탈피 대상으로 삼은 시설

시설은 '거주하는 복지시설'이라 했고 '거주하는' 곳은 주택이니 여기서 복지시설은 주택을 가리킵니다. 주택은 주택인데 장애인이 집단 또는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말입니다.

집단 또는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이 언제? 지역사회에는 단독주택 뿐 아니라 공동주택도 있고 독립주택뿐 아니라 집단주택도 있습니다. 방만 1인실인 기숙사형 생활주택도 있고 한집 한방에 여러 가구가 동거하는 공유주택도 있습니다. 시설도 그런 주택 가운데 하나입니다.

집단 또는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이 문제가 아닙니다. 입주자를 집단으로 움직이며 단체 생활 시키는 행태가 문제입니다. 입주자가 각각 개별적 존재로서 자기 삶을 살게, 저마다 각각 독립 가구로서 독립생활을 하게 도우라고 할 일이지 탈시설을 주장할 일이 아닙니다.

탈피 대상을 잘못 설정했다는 말입니다.

2) 보고서가 제시하는 대안 주택

보고서는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주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주택 확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공공 민간 임대주택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탈시설 장애인에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218쪽

이런 주택이라고

보고서에서 말하는 시설 곧 ‘장애인이 집단 또는 공동으로 거주하는 복지시설’이 아닐까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들어 사는 사회주택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요?

주거 공간뿐 아니라 지원 조직까지 바꾸면 시설 속성을 탈피할 수 있을까요? 시설화를 탈피할 수 있을까요?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 시설과 지원 조직을 바꾸어 준다고 그 시설과 조직의 정체성이 달라질까요? 지원 방식이 달라질까요? ‘유사 시설’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2. 탈시설

박숙경(2016)은 우리나라에서의 탈시설 개념을 둘러싼 용어 논쟁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관점은 탈시설을 느슨하게 광의로 개념화한다. 시설을 개선하고, 탈시설을 지향하는 일련의 과정과 대규모시설 보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탈시설화된 방식과 노력을 모두 탈시설 개념에 포함하며, 이 관점에서 '탈시설화(化)'란 표현을 선호한다. 두 번째 관점은 탈시설을 보다 엄격하고 좁게 개념화한다. 이 관점에서는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의 보편적 주택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경우'만을 탈시설로 개념화하며, '탈시설-자립생활'이란 표현을 선호한다. 12쪽

보고서의 관점은 탈시설을 좁게 개념화하는 두 번째 관점에 가깝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 ① 기존시설을 소규모화하고 개선하는 과정은 시설적 문화와 시설화를 단절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탈+시설화 정책이 될 수 없다. 12쪽
- ②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동거인 3인 이상과 거주하는 그룹홈은 탈시설화가 아님. 179쪽
- ③ 현행 그룹홈,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자립생활주택) 등 중간단계 주거의 수와 이용기간을 축소해야 한다. 218쪽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의 보편적 주택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것만 탈시설로 본다는 말입니다.

다만 '탈시설-자립생활'이란 표현에서처럼 '자립생활'은 별개의 주제이니 탈시설 개념만 추리면 '시설에서 나오기'입니다.

보고서에서 탈시설은 대개 이 뜻으로 쓰였습니다.

보고서 원문에서 '탈시설' 자리에 이 개념 곧 시설에서 나온다는 물리적 탈시설 개념을 대입하면 대개 맞아 떨어집니다.

3. 탈시설화

12~16쪽,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용어 및 주요개념 검토

시설의 문제점은 시설적 문화로부터 비롯되는 시설화가 핵심이다.

시설화는 시설병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자극이 없이 단조롭게 반복되는 시설 생활로 인해 사람들이 꿈과 욕구,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하고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주체의 관점에서 '탈시설화'는 '시설거주장애인이 시설화를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기존시설을 소규모화하고 개선하는 과정은 시설적 문화와 시설화를 단절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탈+시설화 정책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탈시설화를 '탈시설+화'로 해석하고, 기존 소규모화 정책과 같이 기존 시설보호 정책을 개선하는 노력을 탈시설화라 주장하는 것은 '탈 + 시설화 = De + Institutionalization'의 용어 유래와 의미를 오해한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탈시설을 '탈+시설화'로 사용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의 탈시설화정책은 시설화를 벗어나기 위해 첫째, 거주공간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전하고...

178쪽, 본 연구가 도출한 탈시설화 개념

탈시설화 개념 정의

(시설이 아닌) 제약이 최소화된 지역사회의 일반 주택에서 (인간 존재와 삶에 필수적인) 개인의 자유, 자율성, 사생활을 보장받고 (이를 위한) 소득 및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자신의 연령대와 선호에 맞게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inclusion)되어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1) 탈시설화 개념 정의?

시설화를 ‘자극이 없이 단조롭게 반복되는 시설 생활로 인해 사람들이 꿈과 욕구,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하고 무기력해지는 현상’이라고 했고 탈시설화는 ‘탈+시설화’라 했으니

탈시설화는 ‘시설화를 벗어나기’ 또는 ‘자극이 없이 단조롭게 반복되는 생활이나 꿈과 욕구,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하고 무기력해지는 현상에서 벗어나기’로 정의해야 하는데…

탈시설화 개념 정의 :

(시설이 아닌) 제약이 최소화된 지역사회의 일반 주택에서 (인간 존재와 삶에 필수적인) 개인의 자유, 자율성, 사생활을 보장받고 (이를 위한) 소득 및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자신의 연령대와 선호에 맞게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inclusion)되어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178쪽

이렇게 정의하니 좀 생똥맞다 싶습니다.

탈시설화는 ‘시설화를 벗어나기’ 또는 ‘시설에서 나오게 하기’일 뿐입니다.

‘개인의 자유, 자율성, 사생활을 보장받고 소득 및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연령대와 선호에 맞게 사회 일원으로 포함되어 살아간다.’ – 이런 걸 넣으려면 ‘목적’이나 ‘방법’에 넣어야지 ‘개념’에 넣을 게 아닙니다. 시설에 살아도 필요한 것이니 ‘탈시설화’ 개념에 넣을 것도 아닙니다.

2) 탈시설화는 ‘탈+시설화’?

본 보고서는 탈시설화에 관한 국내의 논쟁을 바로잡을 필요성을 제안하며, 탈시설을 ‘탈+시설화’로 사용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의 탈시설화정책은 시설화를 벗어나기 위해 첫째, 거주공간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전하고… 15쪽

① 탈시설화는 ‘탈시설+화’가 아니고 ‘탈+시설화’라면서 탈시설화 정책은 시설 밖으로 이전하는 정책 곧 문자 그대로 ‘탈시설+화’ 정책을 첫째로 꼽으니 생똥맞아 보입니다.

② 탈시설화를 ‘탈+시설화’로 설명한 곳은 12~16쪽 ‘용어 및 주요 개념’ 편뿐입니다.

여기서만 ‘시설화’를 이야기하고 이후 다시는 이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178쪽의 ‘탈시설화 개념 정의’조차 시설화와 연관 짓지 않습니다.

탈시설화는 시설화를 벗어난다는 뜻의 ‘탈+시설화’라 했으나, 실제로는 ‘탈시설+화’ 곧 ‘시설에서 나오게 하기’ 또는 그냥 탈시설 곧 ‘시설에서 나오기’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15쪽 외의 ‘탈시설화’는 대체로 ‘시설에서 나오기’ 또는 ‘시설에서 나오게 하기’로 바꿔 읽어도 됩니다. 바꿔 읽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보고서 원문에서 ‘탈시설화’ 자리에 15쪽에 밝힌 ‘탈+시설화’ 개념이나 178쪽에 정의(?)했다는 탈시설화 개념을 대입하여 말이 되는 곳이 있을까 싶습니다.

③ 시설화가 문제라면서 ‘탈시설, 탈시설’ 합니다.

탈시설화는 ‘탈시설+화’가 아니라면서 ‘탈시설 방안’이라는 보고서 제목에서부터 ‘탈시설, 탈시설’ 합니다. “시설화가 문제다, ‘탈+시설화’ 하자!” 해야 할 텐데 “시설화가 문제다, ‘탈시설’하자!” 합니다.

3) ‘탈+시설화’하게 돕는 일은?

주체의 관점에서 ‘탈시설화’는 ‘시설거주장애인이 시설화를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15쪽

주체의 관점에서 ‘시설화를 벗어난 상태’가 탈시설화라면 정부나 시설의 관점에서 당사자가 탈시설화하게 돕는 일은 뭐라고 할까요? 어떤 용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탈+시설화+화?

※ 보고서는 ‘시설화’를 당사자에게 생기는 병폐 현상으로만 정의했습니다. 운영 및 지원 방식 같은 시설 쪽 행태를 ‘시설화’ 개념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설 운영 및 지원 방식의 ‘탈+시설화’를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4) 기존 시설 소규모화와 개선은 시설적 문화를 단절할 수 없다?

기존시설을 소규모화하고 개선하는 과정은 시설적 문화와 시설화를 단절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탈+시설화 정책이 될 수 없다. 15쪽

기존 시설을 소규모화하고 개선하는 과정은 시설적 문화와 시설화를 단절할 수 없다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렇다 할 근거나 논리적 설명이 보고서에 없습니다.

5) 기존 시설 소규모화와 개선 노력은 ‘탈시설+화’다?

탈시설화를 ‘탈시설+화’로 해석하고, 기존 소규모화 정책과 같이 기존 시설보호 정책을 개선하는 노력을 탈시설화라 주장하는 것은 ‘탈 + 시설화 = De + Institutionalization’의 용어 유래와 의미를 오해한 것이다. 15쪽

시설 소규모화 곧 그룹홈에 분산 거주케 함은 ‘탈시설+화’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룹홈에 분산 거주케 하기’는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 제목이 가리키는 바로 그 ‘탈시설 방안’이라는 말이 되는데 보고서는 이런 것을 탈시설로 보지 않는다 하니 모순입니다.

4. 이상한 논리

1) 이상한 삼단 논법

- ① 대전제 : 시설화가 문제다,
- ② 소전제 : 탈시설화는 '탈시설+화'가 아니고 '탈+시설화'이다.
- ③ 결 론 : 탈시설해야 한다.

2) 논리적 설명이 없는 전제

- ① 대전제 : 시설 문제는 시설적 문화로부터 비롯되는 시설화가 핵심이다.
- ② 소전제 : 시설의 규모를 줄이고 운영 행태를 개선하고 서비스 방식을 바꾸는 노력으로는 시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③ 결 론 : 탈시설해야 한다.

‘시설 규모를 줄이고 개선하는 노력으로는 시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할 논리적 설명이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3) 전제와 다른 결론

- ① 대전제 : 시설화 현상이 있다.
- ② 소전제 : 시설적 문화가 시설화의 원인이다.
- ③ 결 론 : 탈시설해야 한다.

보고서는 “2012 유럽 탈시설화 공동기준은 시설적 문화가 시설화를 촉발시키므로 탈시설화정책은 시설적 문화 제거에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한다.”는 문장을 인용하여 ‘시설적 문화가 시설화의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시설적 문화를 제거해야 한다.’ 해야 할 텐데 ‘탈시설해야 한다.’ 하니 전제가 잘못되었거나 결론이 비약한 겁니다.

5. 한마디로

1) 탈시설

이 보고서에서 탈시설의 실체는 한마디로 ‘시설 조직과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 주택에서 나오기’입니다.

2) 탈시설화

이 보고서에서 탈시설화의 실체는 한마디로 ‘시설 조직과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 주택에서 나오게 하기’입니다.

3) 탈시설화 정책

이 보고서에서 탈시설화 정책의 실체는 한마디로 ‘탈시설’ 문구를 넣어 편집한 일반 장애인복지 정책들입니다.

1. 당사자 참여 및 개인별 지원 체계 구축

2. 소득 및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 : ① 소득 지원 ② 주거 지원 ③ 활동 지원 ④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⑤ 직업 및 주간활동 지원 ⑥ 관계 및 심리 지원

3. 입소 예방과 신규 시설 설치 제한, 시설 폐지(폐쇄)

4. 인력 개발 및 지원, 가족 등 비공식 돌봄 제공자 지원, 모니터링과 이해 증진

‘신규 시설 설치 제한, 시설 폐지’ 외에 새로운 정책이 없습니다. 시설 안과 밖을 차별할 정책도 없습니다. 보고서의 탈시설화 정책에서 ‘탈시설 장애인’ 자리에 ‘시설 입주자’를 대입하면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4) 탈시설 방안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 이 보고서가 마련했다는 ‘탈시설 방안’의 실체는 한마디로 ‘주거 이전 방안’입니다.

399쪽짜리 이 보고서를 요약하면, ‘기존 시설의 주택과 지원 조직으로 는 안 된다. 다른 주택을 제공하고 지원 조직을 바꾸라.’입니다.

평론 뒷이야기

1. 탈시설화 정책의 철학?

탈시설화정책의 핵심적 철학. 166쪽

탈시설화정책은 시설보호정책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그로써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와 인간발달을 이룰 기회를 억압해온 제도적 차별이라는 점에 대한 인정과 성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시설보호제도에 의해 억압되어왔던 이들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회복되고, 이러한 억압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철학적 가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임이 있다.

첫째, 모든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 보장

둘째, 모든 개인의 성원권(成眞權) 보장

셋째, 모든 개인의 다양성과 현재적 및 잠재적 능력 존중과 발현권(發現權) 보장

1) 장애인을 의도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

시설 정책을 만든 사람이나 시설 설립자가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의도로 그랬을까요? 지금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시설 운영자나 종사자가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의도로 그럴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의도로 그랬을까요?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의도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의도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이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의도로 그럴까요?

2) 시설보호정책이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와 인간발달을 이룰 기회를 억압해 왔다? 시설보호제도에 의해 권리가 억압되어 왔다?

시설 정책이 다 보호 정책이고 시설 제도가 다 보호 제도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나친 보호 정책, 보호 행위가 사회참여 기회나 어떤 권리를 억압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보호’하게 하는 정책을 바꾸자, 지나치게 보호하는 행위를 제어하자 해야 자연스러울 텐데…

본 보고서에서의 탈시설화정책은 시설화를 벗어나기 위해 첫째, 거주공간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전하고… 15쪽

이렇게 탈시설화 정책을 이야기하고 탈시설을 주장하니 의아합니다.

3) 철학적 가치?

첫째, 모든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 보장

둘째, 모든 개인의 성원권(成員權) 보장

셋째, 모든 개인의 다양성과 현재적 및 잠재적 능력 존중과 발현권(發現權) 보장

① 이 세 가지 권리 보장이 탈시설화 정책의 철학적 ‘가치’이다? 난해하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탈시설화 정책의 ‘철학’은 무엇일까요?

② 시설 입주자에게도 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치 시설 정책의 철학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굳이 ‘시설 정책’과 대비하여 ‘탈시설화 정책’의 철학이라 할 게 아닙니다.

시설 입주자에게는 이런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시설 입주자를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철학적 가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임’이 없다는 말일까요?

시설 입주자를 위해서도 이 세 가지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면 그렇게 노력하라고 요구해야 할 텐데, 그저 탈시설 이야기뿐이니 의아합니다.

2. 밥그릇 싸움?

1) 탈시설화, 이게 다 돈인데 포기하겠나?

시설들은 대부분 민간 사회복지법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운영자 입장에서 탈시설화는 사업 축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민간 사회복지법인 입장에서는 '시설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 억 원 많게는 수십 수백 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시설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쇄해야하는 탈시설화'가 반가울 리 없다. 87~88쪽

2) 탈시설화, 이게 다 돈인데 포기하겠나?

자립생활주택은 대부분 자립생활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상당수 자립생활센터가 활동지원 중개기관도 운영하고 있다.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와 활동지원 중개사업자 입장에서 탈시설화는 사업 확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입장에서는 '대상자 수에 따라 적게는 수천 만 원 많게는 수십 수백 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운용하는 자립생활주택 사업이나 활동지원 사업을 확대시켜 주는 탈시설화'가 반갑지 않을 리 없다.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와 활동지원 중개사업자 쪽에서 밥그릇 뺏어 오려고 그런다 할 만한 주장 곧 탈시설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무성합니다. 이해관계인 곧 탈시설로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나서서 탈시설을 주장하니 민망합니다.

3. 시설과 활보

1) 시설

"21살 때 가족에게 부담주지 않으려고 시설에 들어갔어요. 시설 들어올 때 '죽어서 나간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그렇게 맘먹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1달 만에 나왔어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늘 보고 말할 사람도 없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인간으로서의 나는 없어지는 거야. 시설 안에서는 생각하면 힘들어요. 생각을 없애려 했어요.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생각을 안해야 해요. 그런데 3.4일후가 되니까 저절로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없어져가는 거지. 그런데 그게 무서웠어요. 사람으로서의 나는 없어지는 느낌이 제일 무서웠어요.(장애당사자 FGI 연구참여자 D)"

"내가 나온 걸 몰라요 1년에 2번씩 집에 가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반찬 잘 나오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난 잘 나온다고 해요. 차마 얘기하려해도 못하겠어요. (장애당사자 FGI 연구참여자 B)"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시설보호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아픔을 주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사람으로서의 내가 없어지는 무서운 경험, 그리고 그곳을 나와서조차 가족에게 부담을 줄까봐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는 시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이다. 325쪽

2) 활보

“내가 계란 프라이 하려는데, 냉장고에서 계란 꺼내느라 5분 걸려, 눈치 보여, 타박해. 계란 하나 탁 쳤는데 박살나서 이리저리 튀고 다른 계란을 겨우 집어 탁 쳤는데 또 박살나서 난리 나고, 눈치 보여, 타박해.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젓가락 잡는 데 30초, 반찬 집는 데 30초, 들어 올리다가 그만 떨어뜨려, 다시 하려니 눈치 보여, 타박해.

내가 손발 얼굴 씻고 싶은데 활보가 다짜고짜 옷을 막 벗겨, 내가 씻을 수 있는 데까지 막 씻겨, 내가 하면 시간 많이 걸리고 답답하다고.

옷 한 벌 사러 백화점 가자 하니 표정이 싹 변하고 구시렁구시렁 하며 뭉그적거리. 옷 갈아입어야지, 화장해야지, 기저귀며 갈아입을 옷이며 화장품이며 화장지며 바리바리 짐 싸야지, 휠체어 꺼내야지, 장애인 콜택시 불러야지, 나가기도 전에 벌써 활보 눈치 보느라 기운 빠져.

햄버거 먹으러 가고 싶다 하니 뭐 귀찮게 챙겨 입고 나가냐고 자기가 그냥 사다 주겠다고 해, 근사한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싶다 하니 심란해하는 표정이 역력해.

시설에서는 보는 눈이 많고 팀장도 있고 사회재활교사와 국장 원장도 있고 정부 지도 감독도 있어 얼마쯤 통제가 되었는데 활보는 순 제 맘 대로야.

난 그저 주는 대로 먹고 해 주는 대로 받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사람으로서의 나는 없어지는 거야. 그저 활보 일감일 뿐이지, 그것도 중증, 기피 대상, 재수 없게 잘못 걸린 일감.

폭행 폭언 학대 추행 착취? 인권 사각지대라 완전 복불복이지.

활보가 집에 있으니 불편하다고 형제들이 안 와, 활보가 해 주겠지 하고 안 와. 오빠가 점심 때 맛있는 것 사 주곤 했는데, 활보가 있으니 활보까지 사 주기 부담스러운지 불편한지 이젠 안 사 줘. 종종 카페에도 함께 갔는데 활보 때문에 이제 같이 안 가. 둘레 사람 다 멀어졌어.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없고 둘레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어.”

“난 30분만 도와주면 되는데 끝나도 활보가 안 가, 4시간 써 달라고 해. 오늘은 도와줄 일 없는데 또 왔어. 활보 때문에 사생활이 없어.”

- ① 이것이 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현실이며(325쪽),
- ② 당사자 관점에서의 이런 이야기가 활보 개념 정의이고(11쪽),
- ③ 활보병이라고도 하는 ‘활보화’는 이렇게 활보에 의해 자극이 없이 단조롭게 반복되는 생활로 인해 꿈과 희망,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하고 무기력해지는 현상이며(13쪽),
- ④ 탈활보화는 ‘탈활보+화’가 아니라 ‘탈+활보화’이지만 탈활보화 정책은 첫째 ‘탈활보+화’ 곧 활보를 지역사회 의 보편적 인력으로 바꾸는 것이고(15쪽),
- ⑤ 활보 교육과 지도 감독 및 서비스 방식 개선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328쪽),
- ⑥ 활보 의존을 예방하고 신규 활보 채용을 제한하고 활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250~251쪽)

4. 탈시설 성과

탈시설 성과 종합 분석 요약

15건의 비교 연구 가운데 10건이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을 정도의 좋은 결과를 보였거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기까지 이르지 못했다. 5건의 비교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탈시설장애인들의 학업능력, 지역사회 생활능력, 사회적 능력 또한 절반 이상의 비교 결과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 외부에 대한 도전적 행동(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이나 사물에 대한 손괴)의 경우 탈시설장애인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완화되었다.

25건의 종단 연구 가운데 15건은 시설거주장애인들이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를 통해 적응행동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했다고 했다. 5건의 다른 연구들은 그러한 향상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3건의 연구는 탈시설장애인의 적응행동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나빠졌다고 보고했고, 2건의 연구는 탈시설장애인의 적응행동이 나빠지긴 하였지만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21건은 탈시설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변화에 관한 연구결과를 포함하고 있는데, 도전적 행동이 개선된 11건의 연구 가운데 4건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였고, 도전적 행동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8건의 연구 가운데 3건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했고, 2건의 연구에서는 탈시설 이후 도전적 행동의 정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4~30쪽에서 요약

시설화는 ‘자극이 없이 단조롭게 반복되는 시설 생활로 인해 사람들이 꿈과 욕구,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하고 무기력해지는 현상’이고 탈시설화는 ‘시설화를 벗어난 상태’라 했는데,

이런 탈시설화 성과는 없습니까? 위에 나열한 어떤 연구에서 ‘탈시설’ 때문에 자극이 없이 단조롭게 반복되는 생활을 벗어났다거나 꿈과 욕구, 인간으로서의 자존감과 기력을 회복했다 할 수 있을까요?

1) 이 정도의 성과로써 탈시설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좋은 결과?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2) 집중 지원 또는 고난도 지원을 받는 사람의 탈시설 전후 비교도 있을까요? '성과라 할 수 있을지 모를' 저 정도의 차이라도 보일까요?

지원 내용과 지원 방식이 동일해도 탈시설만 하면 그런 차이가 생길까요? 지원 방식에 의한 차이보다 사는 곳에 의한 차이가 더 클까요?

3) 이런 비교 연구와 종단 연구 성과로 탈시설이 필요하다 하니...

① 비교 연구

대규모 시설 거주자와 그룹홈 거주자를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룹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할까요?

보고서는 '현행 그룹홈,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등 중간단계 주거의 수와 이용기간 축소', 그리고 '시설이 운영하는 체험홈 설치 제한'을 정책 과제로 제시합니다. 218쪽, 259쪽

② 종단 연구

시설 계속 거주자가 종단 연구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면 시설을 유지해야 한다 할까요? 시설 입주자가 그룹홈 거주를 통해 적응행동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면 그룹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할까요?

보고서는 '기존 시설 폐쇄'를 추진 원칙으로 170쪽, '신규 시설 설치 제한, 시설 폐지 및 폐쇄'를 정책 과제로 제시합니다. 249~261쪽

5. 지원 인력

226~227쪽, 활동 지원

- 1) 활동지원 수급자격 확대
- 2) 본인부담금 감면 혹은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으로 이용시간 확대 : 모든 장애인은 '필요한 시간만큼'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3) 활동보조인 선택권 보장
- 4) 활동보조인 급여수준 상향 조정 + 노동 강도에 따라 단가를 차등화
- 5)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별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활동지원 인력 양성

1) 시설에는 집중 지원이나 고난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가 많습니다. 집중 지원이나 고난도 지원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24시간 직원이 최소 1명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까지는 아니라도 태반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입주자 1명당 직원 1명이 상주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Ⅲ. 7. 가. 시설의 장은 시설거주자의 거실마다 또는 시설거주자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사회재활교사나 그 밖의 필요한 직원 중 1명을 시설거주자와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탈시설자는 분산 거주하게 되니 탈시설하면 대부분 24시간 활동지원사 1명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태반이 그럴 겁니다.

2) 보고서는 모든 장애인이 필요한 시간만큼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활동지원사에게는 노동 강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원해야 한다 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대부분(태반은)

① 필요 시간 : 1주에 24시간×7일=168시간

② 필요 인력 : 1주 40시간 기준으로 168시간÷40시간=4.2명, 탈시설자 1명당 최소 4.2명의 활동지원사가 있어야 하고 휴가나 교육 시 투입할 대체인력도 필요합니다.

※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야간근로시간 :

활동지원사 1명당 야간근로는 1주 8시간×7일÷4.2명=13.33시간이고, 월 평균 (8시간÷4.2명)×(365일÷12월)=57.94시간입니다. 대상자에 따라 휴게(수면)시간을 얼마쯤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 지원 조직 : 활동지원사뿐 아니라 개인별 직업 및 주간활동 지원과 관계 및 심리 지원(235~246쪽)을 담당하는 인력도 필요합니다. 이들을 운용하고 지도 감독하거나 행정 업무를 담당할 인력도 필요합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탈시설화 정책은 결국 거주 공간인 사회주택들과 이런 지원 조직을 결합하는 유사 시설로 바꾸자는 정책 아닌가요?

3) 시설에서는 입주자 1명당 최대 0.43명(2명÷4.7명)의 생활재활교사를 배치하는데, 탈시설하면 대부분(태반은) 1명당 최소 4.2명의 활동지원사를 지원하자?

사는 곳에 따라 이렇게 차별하자? 활동 지원뿐 아니라 소득 지원, 직업 및 주간활동 지원, 관계 및 심리 지원도 다 이렇게 차별하자?

추첨으로?

제6장 추진 원칙 넷째, 개인의 장애상태가 탈시설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순서를 정할 수밖에 없다면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하는 것이 좋다. 168쪽

4)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대부분(태반)의 입주자에 대하여

입주자 개인별 직업 및 주간활동 지원과 관계 및 심리 지원을 전담하고 소득 지원, 의료 및 건강 지원 등을 챙길 사례관리자 같은 직원을 배치하고(235~246쪽)

입주자 1명당 최소 4.2명의 보조 인력을 배치하되 이들의 행정 업무를 활동지원사 수준으로 줄이고,

월 평균 58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집중 지원 또는 고난도 지원을 제공하는 직원에게 노동 강도에 따라 가산 수당을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5) 이 보고서가 시설을 비판하는 논리로 그런 지원조차 거의 받지 못하는 시설 밖 실태를 비판한다면 어떤 대책이 나올까요?

첫째, 시설에서 살게 하고

둘째, 입주자에 대한 소득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직업 및 주간 활동 지원, 심리 지원과 가족 지원 및 이해 증진 노력을 확대 강화하고

셋째, 입주자가 필요한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최소 4.2명의) 지원 인력을 배치하되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별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 배치하고 노동 강도에 따라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6. 소감과 희망

1) 소감

이 보고서와 여러 탈시설 담론을 공부하다 개념이 혼돈스럽고 논리가 난해하여 미욱하나마 나름대로 정리해 보는데, 입주자를 사람답게 도우려 애쓰는 사회사업가들이 눈에 밝히고, 입주자가 당당히 주인 노릇 하며 자기 삶을 살아가고 돌레 사람을 비롯한 지역사회 여느 사람과 어울려 사람 구실을 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들이 꺾기에 맴돌고,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 그 모습 그 이야기에 감동하여 아~ 사람 사는 것 같다 눈물 나게 고맙다 하며 응원하던 일들이 떠오르고, 시설 떠난 후에 활보 만나 제구실 놓아 버리고 돌레 사람과 떨어져 속상하던 탄식 소리들이 쟁쟁하고, 지난 세월 파란만장했던 시설의 역사가 주마등처럼 스쳐 갑니다.

2) 희망

탈시설화 정책이 국가의 책임을 대신 저온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들, 그리고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자괴감을 일으키게 하는 칼날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풀어나가야 할 장애를 가진 시민의 온전한 시민권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다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나서는 여정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한다. 그 길에 이 보고서에 담긴 연구 내용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331쪽

같은 마음입니다.

이 평론이 탈시설화 정책을 주창해 온 인권운동단체와 자립생활센터들과 그곳의 활동가들 또는 이 보고서의 연구자들을 적대시하고 자괴감을 일으키게 하는 칼날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신·신체 약자들의 사람다운 삶과 사람살이를 위해 더 나은 길을 찾아 나선 탈시설화 운동의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어 가는 여정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합니다. 그 길에 이 평론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3장. 사고

법원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초가 있습니다.

첫째, 현실을 알아주고 정상을 참작합니다.

시설의 인력·재정과 업무 특성상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얼마쯤 참작합니다.

진정성을 알아줍니다. 평소 어떤 뜻으로 어떻게 도와 왔는지 그 기록과 설명, 그리고 법정에서의 태도나 인상을 고려합니다. 당해 사고 자체나 한두 번 또는 한두 가지 잘못만으로는 무겁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소 진정성 있게 지원하며 잘 기록해 놓는다면 사고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독관청이나 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 운동 단체나 입주자나 가족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둘째, 운영규정, 근로계약서, 입주계약서, 사고 대응 지침, 업무 일지 등의 문건을 판단 근거로 활용합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났을 때 변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문건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특히, 운영규정과 근로계약서 등에 주의나 보호 관련 조항은 최소한으로 기술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항이 많거나 세세하면 다 지키기 어렵고 결국 생활지도원이 사고 책임을 뒤집어쓰기 십상입니다. 주의나 보호 의무가 포괄적으로 해석될 소지도 없게 해야 합니다.

사고 대책

1. 법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8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보호 책임자, 보호 대상, 기본적 보호,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한정이 없습니다. 사고가 났다 하면 어느 시설 누구라도 이로 인해 시비 문책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¹⁾

입주자 인권 실현에, 사생활 및 지역사회생활 등의 법익 실현에, 그야말로 압초요 텃이요 족쇄입니다. 이보다 더한 독소 조항이 없습니다.

보호 책임자, 보호 대상, 기본적 보호의 범위를 한정해야 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제3호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된다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제3호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피진정인의 관리 및 보호조치가 소홀하여...”

“충분한 인력의 생활지도사 등을 배치하여 망인의 운동을 보살필 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시설과 인원

장애인 시설이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곳인가? 생활지도원이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인가?

보호·감독 의무가 있는 시설이나 인원을 특정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보호·감독하는 곳이라거나 그런 의무가 있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보호조치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 대상은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과 장애영유아 거주시설뿐이며 그 보호조치라는 것도 ‘응급상황 대처와 신체적 손상·감염 예방’뿐입니다.¹⁾

그런데도 사고가 나면 시설의 종류와 상관없이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거나 처벌하곤 하니,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3호와 관련하여 별표 따위에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시설이나 인원’을 한정해야 합니다.²⁾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 별표 5. - Ⅲ. - 9. - 라. 시설의 종류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 보호조치 - (가) 시설에 응급조치 및 후송체계를 갖추어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 손상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보호실을 활용하는 등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도 동일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시설, 시각장애인 시설,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 시설,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아인 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에 대하여는 ‘보호조치’ 항목이 없습니다.

2) 대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보호자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

장애인 시설 입주자는 다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인가? 모든 일에 항상 보호·감독해야 하는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을 특정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상황·사안을 특정해야 합니다.

어떤 장애인이, 어떤 상황 사안에서, 어떤 보호가 얼마쯤 필요할 뿐인데... 장애인 시설 입주자를 다 이렇게 취급함은 온당치 않습니다.

참조 : 복지요결 ‘상황적 약자’

보호가 필요한 사람 상황 사안을 특정하지 않고, 필요 이상의 보호를 삼가지 않고, 장애인 자체가 보호 대상인 양 규정하거나 온갖 일에 보호하려 드는 잘못...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장애인 인권 실현에, 장애인복지사업에, 이보다 나쁜 게 있을까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3호와 관련하여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한정해야 합니다. 별표 따위에 ‘장애인 시설 입주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따위로 대상자를 정하고 판단 근거를 정해야 합니다.

3) 기본적 보호와 방임 행위

무엇이 ‘기본적 보호’인가?

어떤 행위가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인가?

‘기본적 보호’의 범위를 한정하고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의 판단 근거를 특정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동법 제59조의9제3호 단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는 겁니다.

“단,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시설은 입주계약서나 개인별 지원 계획서에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그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보호 조치를 기술하여 시설의 책임 범위를 이로써 한정한다.”

이와 같이 한정하지 않고도 시설의 인력¹⁾으로 근로기준법을 지키면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3호에 걸리지 않을 만큼 보호할 수 있을까요?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

생활지도원: 시설거주자가 18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10명당 1명 이상, 아동과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시설거주자 5명당 1명 이상,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설거주자 4명당 1명 이상,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영유아 거주시설의 경우 시설거주자 3명당 1명 이상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56쪽 [별표 3]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 - 생활지도원(생활재활교사) ①중증, 영유아장애인 현원 4.7명당 2명 ※ “이용자 현원 ÷ 4.7 × 2”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로 지원 ②아동장애인 현원 4명당 1명 ③지적장애, 시각장애인 현원 5명당 1명 ④지체, 청각·언어장애인 현원 10명당 1명

4)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

법 제59조의9제3호의 보호 의무가, 그로 인한 보호 행위가, 다른 법익을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제60의4제2항의 ‘지역사회생활’과 제3항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30조제3항의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와 제5항의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하기 쉽습니다.

법 제59조의9제3호의 보호 의무로 인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보호’ 행위를 얼마쯤 제한하는 조항을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하고

시설 운영지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입주계약서와 개인별 지원계획서에도 명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참조 : 18쪽 ‘법적 인권 실현을 위한 조치’

② 안전을 위한 보호 행위와 다른 권익 실현을 위한 지원 행위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심사 평가 중재하는 절차나 기구가 필요 합니다.

이를테면 법원의 화해·조정 서비스에 이런 기능을 추가하거나, ‘인권 지킴이 지원센터’ 또는 가칭 ‘복지 분쟁 조정위원회’ 같은 기구에 이런 기능을 맡기는 겁니다.

2. 시설의 대비 조치

1) 사고 관련 예산을 편성합니다.

① 화재보험료(대인대물) 및 상해보험료

② 의료재활사업비(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비급여 대상 진찰 처치 투약 수술 등 지역사회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참조 :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50쪽 - 별표 4.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예시)

2) 보험에 가입합니다.

①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 : 단체 상해공제, 복지시설 손해배상 책임공제, 복지시설 화재공제, 영업배상 책임공제 등

참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종합보험 (VMS 공지 글 참조) :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고 배상책임 등에 대비한 국고 보조 보험

3) 사고 예방 및 대응 지침과 관련 물품을 갖추고 교육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은 “응급조치 및 후송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4) 운영규정과 홈페이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입주계약서와 개인별 지원계획서에 지원 원칙과 방법을 명시합니다.

참조 : 18쪽 '법적 인권 실현을 위한 조치'

3. 생활지도원이 할 일

1) 운영규정,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입주계약서나 개인별 지원계획서 따위에 밝힌 지원 원칙과 방법에 따라 지원합니다.

2) 지원 일지를 충실히 작성합니다. ‘기록’이 판결을 좌우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따위의 사고라면 몰라도, 입주자의 인권을 실현하려다 생기는 사고, 복지요결을 적용하다 생기는 사고, 입주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세우려다 생기는 사고,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얼마쯤 대범해지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¹⁾

1) 사고 나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고칠 건 고치고 바꿀 건 바꾸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배상할 건 배상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물러날 일이면 물러나고… 각각 합당하게 조치합니다.

뜻을 좇아 행하다가 잘못되어 비난 징계 형벌 받고 애통하며 눈물 날 때 사회 사업가이기에 오히려 복으로 여기고 그 괴로움을 감수 감내합니다.

다만 뜻을 좇아 행할 뿐입니다.

뜻으로 사는 존재인데 그 뜻을 버리고 달리 행할 수 있을까요?

의를 위해, 사랑을 위해, 이념·신앙·자존심·명예를 위해, 목숨을 내놓기도 하는데… 해직, 징역·벌금 따위가 대수일까요?

시비 책임 따위를 면피하려고 입주자의 ‘삶’을 희생시킬 수 있을까요?

‘삶 사람살이 생활’을 버리고 그저 안전하게 ‘생존 연명’이나 하는 꼴이라면 그런 안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고도 ‘산다’ 할 수 있을까요?

사고 변론

1. 서론

1) 사고에 대해 시설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거나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대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①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한하여 처벌한다.

참조 :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로 인한 책임을 구별하지 않으나 형법에서는 과실범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곧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한하여 처벌합니다.

2) 손해배상책임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 또는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변론 여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불법행위나 범죄가 성립하려면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곧 그 상황에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그 같은 직책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 곧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로서는 그 상황에서 보통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불법행위나 범죄가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입주자 지원 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불법행위나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사유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데 정당행위나 피해자의 승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입주자와 합의하여 지원한 행위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변론은 이런 사유를 입증하는 겁니다.

③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손해가 있어야 하고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참조 : ‘손해’는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대한 손해입니다. 직접적 손해뿐 아니라 일실이익(기회비용)과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합니다.

④ 불법행위나 범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가해자가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이면 그 감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나 외인을 가해한 경우 시설이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첫째 요건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사고 변론은 주로 위법성과 과실 여부를 다투는 데 있습니다. 문제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 곧 정당한 사유가 있고 주의를 게을리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밝히는 겁니다.

3) 민사소송의 원칙

- ① 처분권주의 : 당사자가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만 판정합니다. 법관이 알아서 일방의 권리를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 ② 변론주의(↔직권탐지주의) :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한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법관이 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는 게 아닙니다.
- ③ 서면주의(↔구술주의) : 실제 재판은 준비서면에 드러난 쟁점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 ④ 자유심증주의 : 주장하는 태도, 성실성, 변론할 때의 인상 등을 고려하여 사실인정을 합니다. 확증이 없어도 여러 사정을 보아 개연성이 있으면 사실이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자신의 권리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증거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서면으로 잘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가 엄밀하거나 확실하지 않더라도 판사를 잘 설득하면 인정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변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에서도 공판은 당사자주의 원칙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각자 주장을 입증하고 반증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은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가 모두 입증해야 하고 검사의 유죄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므로 피고인으로서 스스로 무죄임을 입증할 의무는 없지만, 주장과 입증을 위한 자료는 충실히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2. 위법성

어떤 행위가 불법행위나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데 정당행위와 피해자의 승낙 등을 그런 사유로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¹⁾

따라서 입주자를 지원하는 어떤 행위가 불법행위나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이거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별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입주자와 합의하여 지원한 행위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변론은 입주자 지원 행위에 이런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1) 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별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별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별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하지 아니한다.

1) 정당행위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① 법령에 의한 행위

장애인**복지법** 제60의4제2항의 ‘지역사회생활’과 제3항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30조제3항의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지 자유’와 제5항의 ‘외부와의 소통권’을 비롯한 장애인 인권 및 입주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합니다.

② 업무로 인한 행위

운영규정,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입주계약서와 개인별 지원계획서 따위에 명시한 대로 입주자 지원 원칙에 따라 행한 ‘정당한 업무 행위’입니다.

우리 시설의 입주자 지원 원칙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시설은 입주자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복지를 이루는 데 입주자가 주인 노릇 하게 돕고 나아가 불편하고 위험할지라도 저마다 각각 자기 삶을 살게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0의4제3항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둘째, 우리 시설은 입주자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복지를 이루는 데 입주자와 둘레 사람이 함께하게 돕습니다. 나아가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복지 수단으로써 사람들과 어울려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0의4제2항의 ‘지역사회생활’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제3항의 ‘사회 활동 참여’와 제5항의 ‘외부와의 소통권’을 보장하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③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참조 :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01.16. 선고 [2013도6761](#) 판결)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 사람이 사람답게 복지를 이루고 사회가 사람 사는 사회 같기를 바랍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인격을 존중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약자도 살 만한 사회 곧 어느 사람이 이용하는 일반 복지 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이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입주자가 자기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하게 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 일반 수단을 이용하여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그래야 지역사회가 약자도 살 만한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 운영규정 등의 지원 원칙과 방법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침해될 수 있는 이익 곧 안전도 중요하지만, 보호되는 이익 곧 사람답게 살 권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안전’ 등의 이익이 얼마쯤 침해될 수 있음을 알더라도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 행위를 얼마쯤 제한하려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2) 피해자의 승낙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① 우리 시설은 입주할 때 당사자와 및 그 가족이나 후견인 등과 계약하고, 해마다 당사자 및 가족을 비롯한 둘레 사람과 의논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는데, 그 입주계약서와 개인별 지원계획서에

장애인복지법 제60의4제2항의 ‘지역사회생활’과 제3항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30조제3항의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와 제5항의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하는 지원 원칙과 방법을 명시하고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대신 해주거나 시설 안에서 돕는 방식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로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점, 더디고 힘들고 위험해도 최대한 당사자가 하게 돕고, 둘레 사람과 함께하게 돕고, 시설 바깥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수단을 이용하게 돕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합의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60의4제2항의 ‘지역사회생활’과 제3항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30조제3항의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와 제5항의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보호’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합의했습니다.

②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까지 배제한다는 계약이 아닙니다.

약관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3호의 ‘보호’ 노력이 자칫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입주 계약할 때 또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울 때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그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보호 조치를 밝힘으로써 ‘보호의무’를 얼마쯤 한정하여 그만큼 다른 중요한 권익들을 보장하겠다는 계약입니다.

이는 “단,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시설은 입주계약서나 개인별 지원계획서에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그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보호 조치를 기술하여 시설의 책임 범위를 이로써 한정한다.”고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3호의 단서와 약관법에 따라 적법하게 맺은 계약입니다. 참조 : 65쪽 ‘법 제59조의9 단서’와 같이 먼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③ 이와 같이 작성한 입주계약서나 개인별 지원계획서에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과 의논하여 이를테면 혼자서 또는 둘레 사람과 함께 등하교·출퇴근·목욕하거나 가게·학원·문화센터·친척 집에 다녀오거나 극장·야구장·공원 등에 놀러가거나 칼과 불을 사용하여 요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이익을 위해 이와 같이 할 경우 ‘안전’과 같은 다른 이익이 얼마쯤 훼손될 수 있음을 알고 감수하겠다는 뜻에서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3. 과실

불법행위나 범죄가 성립하려면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곧 그 상황에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변론은 입주자를 지원하는 데 주의의무에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그런 한계 내에서 ‘보통의 생활지도원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1) 주의의무의 한계

물론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법에 규정된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의 생활지도원 배치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3호에 걸리지 않을 만큼의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제3호에 의한 주의 내지 보호 의무를 엄격히 요구하면, 입주자 개개인의 삶과 사람살이를 위한 지원 곧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같은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특히 중증장애인은 이런 권익을 실현하는 데 얼마쯤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보통의 생활지도원이 이런 일의 위험을 예견 회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죄를 적용한다면 결국 장애인 시설의 주의나 보호란 사실상 간섭·통제나 구속에 가까워질 것이고 따라서 시설은 사실상 수용소나 다름없게 되고 입주자는 안전하게 생존 연명이나 하는 신세가 되고 말 겁니다.

2) 주의의무 이행 입증

① 입주자에 대한 지원 행위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 그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입주자를 지원하는 행위를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일반인으로서 그 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또는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15.11.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② 변론은 장애인 시설에서 입주자 지원에 요구되는 통상적 수준의 주의의무 위반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입주자를 지원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시설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한 지원일지와 개인별 지원보고서 따위가 증거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보면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시설 직원 차를 타고 학교 다니던 학생이 버스 타고 등하교하도록 도왔습니다. 얼마동안 직원과 함께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버스 기사와 인사하고, 차비 내고, 승객들 얼굴을 익히고, 하차할 곳을 익히고, 하차 후 학교 가는 길을 익혔습니다.

어느 날부터 교문을 100미터 남겨 두고 혼자 가도록 하고, 500미터 두고 혼자 가도록 하고, 하차 후 혼자 가도록 했습니다. 잘 갔습니다. 용기 내어 혼자 버스 타고 가도록 했습니다. 기사님께 부탁드리고 승용차로 따라갔습니다. 내릴 곳에 잘 내렸고 학교까지 잘 갔습니다. 하교도 같은 방법으로 도왔습니다. 이제 혼자 버스 타고 학교 다닙니다.”

4. 책임성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나 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불법행위나 범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가해자가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이면 감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나 외인을 가해한 경우 시설이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¹⁾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 : [관련 판례](#) 38건

1)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② 감독의무자를 같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게 같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에서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보통 피해자가 집니다.

다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책임을 가해자에게 지우는 (입증책임 전환) 경우도 있고, 과실이 없어도 불법행위책임을 지우는 (무과실책임 원칙)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불법행위를 특수한 불법행위라고 하는데 민법 제755조 이하에 정한 감독자 책임, 사용자 책임,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 책임 등이 그러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5. 최후 변론

1) 보호 필요, 인정합니다. 어떤 보호가 얼마쯤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요. 인정합니다.

다만 그건 그 사람이 그 때 그 일로 그런 보호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말이지, 장애인이 다 보호 대상자인 양 장애인 자체가 보호 대상자인 양 보호하려 들어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보호하려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저도 압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호 소홀이라는 죄목의 시비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음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 처지 그 수고 그 어려움 이해합니다.

다만...

저도 사람입니다. 그러니 장애인이라는 껍데기 말고 이 ‘사람’ 진짜 저를 봐 주십시오. 보호라는 이름으로 구차히 연명시키지 말고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사람 사는 것 같이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사람이고 인간이게, 아프고 다치고 죽는다 해도 제 삶이고 제 사람살이이게, 하루라도 그렇게 사람같이 살다 가게...

2) 어느 시설에서 입주자를 폭행했다 하여 야단입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설은 괜찮습니까? 본질적으로 다르다 할 수 있습니까?

친절하게 보호하는 시설이 폭력으로 보호하는 시설을 욕한다면 그야말로 오십보백보입니다. 보호라는 미명 아래 입주자를 대상화하고 구속해 온 연명 서비스... 이제 그만 합시다.

3) 뒷산 가는 길 어느 가게에 새장이 있습니다. 사고 나지 않게 좋은 시설에서 친절하게 잘 먹이고 잘 보호해 주는데 새는 읍니다.

뒷산 새들은 노래하며 어울려 노닙니다.

사례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1) [15진정0374300](#) 피해자의 자해나 우발적 사고 또는 다른 입주자들의 괴롭힘에 의한 상해 2015.08.20.

2015. 1. 9.과 2. 23. 거주인 이○○이 피해자의 손등을 물거나 같은 해 2. 12. 거주인 전○○가 피해자의 눈과 이마에 상해를 입힌 행위, 같은 해 2. 16. 거주인 정○○가 문을 닫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사건으로서 피진정인들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4. 9. 12. 피해자가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한 이후 거주인 송○○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상해를 입힌 행위는 생활재활 교사인 피진정인 4가 알고 있었고, 피진정인 1(시설장), 2(사무국장), 3(생활재활팀장)은 피진정인 4가 작성한 생활관찰일지를 통하여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진정인 1, 2, 3, 4가 거주인 송○○과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7제3호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사회복지법원 ○○○○ 이사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 나. 피진정인 1에게, 피진정인 2, 3, 4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소속 종사자들에 대하여 거주인 보호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2) [14진정0871400](#) - 응급체계 미비로 사망 2015.08.20.

지적장애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
피해자가 사망하기 이전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와 거주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상황 대응 지침이나 교육은 없었으며, 피해자 사망 이후에도 관련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우리 위원회 현장조사 이후 피진정인이 위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표준 매뉴얼(간호영역)’을 보완하여 제출한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119 긴급구조 요청 상황, 평일주간 및 야간, 공휴일에 따른 대응절차, 2인 1조 이송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피해자의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피진정인(시설장)을 경고 조치하고, 응급 상황 대응 지침을 마련해 전 종사자와 전 거주인이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판단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제3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

3) [14진정0553200](#) 입주자들 간의 성추행·성폭력 2015.11.19.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제3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에서 거주인들 간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 조치를 하였음에도 피진정인의 관리 및 보호조치가 소홀하여 지속적으로 유사한 거주인간의 성폭력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바,

A행정기관장과 B행정기관장에게, ○○○을 폐쇄하거나 거주인 전원을 다른 시설로 분산 수용할 것을 권고한다.

2. 법원 판례

1) 시설 내 러닝머신에서 운동하다 넘어져 사망한 사고
대전지방법원 2015나102710 판결서 2015.12.21. ([판결서 인터넷 열람](#))

1. 기초사실

나. 망인은 2013. 3. 6. 19:40경 시설 내 2층 다목적실에 설치된 러닝머신에서 운동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위 운동기구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 내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13. 9. 23. 사망하였다.

2.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피고(원장)는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한 망인의 상태를 잘 살펴 망인이 위 운동기구를 이용하거나 위 시설에서 생활할 때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고, 위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나 생활지도사 등 직원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작동되지 않는 운동기구를 비치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충분한 인력의 생활지도사 등을 배치하여 망인의 운동을 보살필 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망인은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의 동작수행 대부분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뇌병변장애 2급인 중증장애인이고, 특히 망인은 우측 편마비 증세를 보여 오른손은 전혀 사용할 수 없었고 걸을 때는 약간 불편한 자세로 걸어 다녔으며, 망인이 러닝머신을 이용하게 되면 러닝머신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고 이용해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생활지도사의 지속적인 동행과 보살핌이 없는 상태에서 망인이 러닝머신 등 운동

기구를 이용할 경우 균형을 잃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다목적실에는 생활보호사 1명이 5명의 중증장애인을 인솔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보호사가 위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망인을 지속적으로 돌볼 수 없었다.

바) 생활보호사가 러닝머신의 최저속도로 설정하여 망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러닝머신을 하는 것을 계속하여 지켜볼 수 없는 상황에서 망인 스스로 위 운동기구를 멈추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운동기구에 긴급한 상황에서 작동이 멈춰지도록 하는 안전핀 등의 장치가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2) 다만 위와 같은 망인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000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보조기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보행을 하거나 간단한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망인이 위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을 잘못 딛거나 균형을 잡지 못하여 넘어진 망인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기존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망인의 개별적 특성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망인이 비록 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이나 평소에도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러닝머신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오로지 망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에게만 돌린다면, 장애인 보호인력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는 피고와 같은 장애인 보호 기관들이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들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게 되는 현실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 등의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한밤중 간질발작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한 사고 -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전문 : [대전고법 2014.7.18. 자 2014초재78 결정](#)

한밤중에 잠을 자던 장애아동 갑이 깨어나 문을 두드렸으면 갑이 다시 잠이 들 때까지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동태를 살피거나 특별히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갑을 의자에 앉도록 하고 동요만 틀어준 채 곧바로 다른 방으로 가서 잠을 잔 업무상 과실로 갑이 그 무렵 간질발작으로 인한 호흡곤란 또는 심장부정맥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의자 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부분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함

이 사건 신청 중 피의자 4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관한 부분을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② ○○○○맹아원의 운영지침서 및 내부규정에 의하면, 생활지도교사는 거주시설 이용자인 장애아동이 항상 교사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며, 자기가 담당하는 장애아동을 보호해 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고, 밤 동안 응급 환자 발생 등의 비상시에는 수녀원에 연락해야 하며, 야간근무자는 담당하는 생활인들이 모두 취침한 후에 자율적으로 4시간의 취침을 할 수 있는 등의 업무를 부담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야간근무를 하는 생활지도교사는 진실방 및 향기방에 소속된 장애아동 각 4명, 총 8명의 장애아동을 돌보게 되는데, 잠을 안 자는 장애아동이 있으면 다시 잠이 들 때까지 보호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응급조치 및 연락을 취해야 하는 등 장애아동 8명의 안전을 책임져야 했던 점, ③ 피해자 신청외 1(11세, 여)은 2011. 11. 21. ○○○○맹아원에 입소하였는데, 양안 시각장애 1급, 뇌병변 4급, 중증간질인 레눅스가스토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2011. 5. 23.경 서울아산병원에서 위 간질 치료를 위한 뇌량절개술을 받고 이후 경련 조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항경련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며, 수시로 힘이 빠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대었다가 1분 이내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고개를 드는 형

태로서 비전문가가 볼 때는 조는 것과 혼동할 수도 있었던 수준으로 발작을 하였으나, 사망 1주일쯤 전부터는 몸도 더 많이 기울어지고 간질 증세가 더 자주 있었던 점, ④ ○○○○맹아원조차도 피해자의 증세를 우려하여 2012. 9. 21. 피해자의 부 신청인, 모 신청외 2로부터 '피해자가 ○○○○맹아원에서 생활하면서 따르는 위험부담(간질, 기도 폐쇄 등)에 대해 숙지하고 있으며 ○○○○맹아원을 신뢰하고 보육을 위탁함에 있어 차후 응급상황 및 문제 발생 시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도 받았던 점, 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하여는, 평상시 갑작스러운 간질발작으로 쓰러지면서 어딘가에 부딪혀 다칠 경우에 대비하여 의자나 책상 등 높은 곳에 혼자 있도록 하지 않고, 앉을 때는 피해자의 상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안전띠가 있는 의자로서, 피해자의 부모가 특수 제작한 의자 등을 주로 이용하도록 지도하며, 일상생활, 이동, 식사 및 취침 전후에 생활지도교사의 시야 범위에 있도록 하고, 특히 야간에는 피해자가 자주 잠을 깨는 편이어서 생활지도교사가 그에 대해 특별히 동태를 주시하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홀로 있거나 높은 곳에 있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하며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는 등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위와 같은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피의자 4 및 다른 생활지도교사들은 피해자의 부모가 준비한 헬멧을 취침 시간을 포함하여 평상시 피해자에게 착용시켰으나 그것만으로 모든 보호조치가 끝났다고 할 수는 없다), ⑥ 피의자 4는 2012. 11. 7. 19:00경부터 다음 날 9:00경까지 장애아동 야간돌봄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2012. 11. 8. 1:19경 ○○○○맹아원 진실방에서 자다가 깨어 문을 두드리자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동요를 틀어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 앞에 있는 일반 의자에 앉도록 한 뒤 피해자가 아직 취침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소로 가서 취침을 한 점, ⑦ 그런데 피의자 4는 피해자가 간질발작으로 의자에서 떨어지거나 책상에 부딪힐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고정할 수 있는 특수의자를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홀로 두지 말고 계속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안전조치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어야 하고, 실령 옆 방에 있는 다른 장애아동을 돌보기 위해 다른 방으로 갔다고 할지라도 최대한 빨리 피

해자에게 돌아와 피해자가 취침할 때까지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실제로 다른 생활지도교사 피의자 2는 피해자가 잠을 잘 자지 않는 편이라 거의 함께 잤고, 생활지도교사 피의자 5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몸이 아프거나 보호가 좀 더 필요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구분하여 전자의 아동과 같이 자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홀로 남겨둔 채 다른 방으로 가서 잠을 잤던 점, - 중략 -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의자 4로서는 2011. 11. 7. 19:00경부터 다음 날 9:00경까지 ○○○○맹아원에서 장애아동 야간돌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2012. 11. 8. 1:19경 그곳 진실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깨어나 문을 두드렸으면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 때까지 그 옆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면서 동태를 살피거나 특별히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의자에 앉도록 하고 동요만 틀어준 채 곧바로 다른 방으로 가서 잠을 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간질발작으로 인한 호흡곤란 또는 심장부정맥 등을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어떠하다.”고 판결합니다. 시설 운영지침서와 내부규정과 동의서를 근거로 삼아 판결합니다.

3) 참고 : 뇌병변 장애인이 술에 취해 지하철 선로에 내려가 전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

전문 : [부산지방법원 2006.08.11. 선고 2006가합3625 판결](#) (주요 대목은 바로 여기 숨은 설명 참조 - 한글에서 조판부호 보이기 Ctrl+G,C)

지체장애 2급의 뇌성마비 장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 안전선을 넘어 선로 쪽으로 걸어가다가 전동차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경우에, 지하철 관리·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의 재정 상황과 그에 따른 인력현황, 이용승객의 수, 역의 구조, 안전사고의 빈도 등이 사건 시정역을 포함한 부산 지하철역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승강장마다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 중략 ~ (승객) 스스로 위험을 방지하도록 주의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승강장에 상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것이 사고방지조치로서 불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참고 : 고등학생이 점심시간에 급우가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차 뒷 머리부분을 교실 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사고

전문 : [대법원 1993.02.12. 선고 92다13646 판결](#) 주요 대목은 바로 여기 숨은 설명 참조 - 한글에서 조판부호 보이기 Ctrl+G,C)

가해자의 분별능력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담임교사 등으로서 이 사고발생을 예측하였거나 예측이 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대법원 2002.05.10. 선고 2002다10585 판결

유치원이나 학교의 교사는 원아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아와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원아나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¹⁾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김우청의 입장에서 이 사건 성추행을 미리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²⁾하고, 따라서 피고 김우청에게 원고 1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되어 책임능력은 물론 의사능력도 없고, 유치원에 입학하여 45일 정도 되어 유치원 생활에 채 적응하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 유치원생들에 있어서는 다른 각급 학교 학생들의 경우와 달리 유치원 수업활동 외에 수업을 마치고 그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가 유치원 수업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유치원 담임교사는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법정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다.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보호감독의무는 어떤 장애인에 대해? 모든 장애인?

2) 피고 1은 유치원을 직접 운영하는 자로서 유치원 내에서 아빠선생님으로 불리면서 유치원의 원아들이 많이 따랐으므로 그 경위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피고 1이 유치원 내의 한 공간에서 원고 1을 추행하리라는 점을 피고 김우청의 입장에서 미리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

6)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취소 및 시설폐쇄 처분

전문 : [부산고등법원 2015.06.12. 선고 2015누20336 판결](#) 주요 대목은 바로 여기 숨은 설명 참조 - 한글에서 조판부호 보이기 Ctrl+G,C)

갑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반복적·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갑 법인에 대하여 관할 시장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제1 처분)을, 관할 구청장이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처분(제2 처분)을 하자 법인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시장·구청장에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딸에게 대표이사직을 물려주었고 이 사건 시설장은 현 대표이사의 남편인 점, 시설장인 남편이 사고로 물의를 일으키고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문책하기는커녕 재차 시설장으로 임명하는 등 상식에 벗어나는 법인 운영 형태를 보인 점, 법인은 아동학대 및 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등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주의, 시정 등의 행정지도를 받았고, 2013. 12.에는 사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는데, 아동학대 등에 책임이 있는 시설장을 문책하지 아니한 채, 이 사용자들의 과장이나 허위 신고 등으로 부당하게 사업정지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정지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점, (이 시설의 종사자 1인당 관리아동 수는 2.2명으로 전국 아동보호치료시설 종사자 1인당 평균 아동관리인원인 2.5명보다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한낮에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진 성폭력범죄를 6개월 동안이나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 이 사건 제1 처분에 앞서 실시된 청문절차에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특히 원고의 현 대표이사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방지하지 못한 데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시설장을 문책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둔하면서 문제의 원인이 마치 통제가 불가능한 비행청소년들에게 있다는 식의 그릇된 사고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구조적 폐단이나 누적된 전과를 반영하여 판결합니다.

제4장. 근무제

1. 근무제 원칙

입주자 개별 지원이 가능한 근무제, 사회사업가의 건강과 가정에 관장은 근무제, 이 두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모색합니다.

1) 입주자를 몇 명씩 분담하여 책임 지원합니다.

책임 지원하는 직원이 없으면 당사자나 가족이 어떤 과업을 누구에게 의논하고 부탁할까요? 누가 맡아 주기 바랄까요? 이리므로 예컨대 30인 시설이라면 상위 직원 10명이 입주자를 3명씩 맡아 책임 지원하고 나머지 직원은 이들을 보조합니다.

책임 지원하는 직원은, 담당 입주자의 돌레 사람을 찾거나 만들고 개인별 맞춤 지원 조직과 맞춤 실습생을 확보하는 데 힘씁니다. 담당 입주자에 대한 비번일의 일은 근무일에 미리 준비해 놓고 최소한의 지원만 당번 직원에게 부탁합니다.

2) 야간 근무는 1인당 주 1회 이내로 합니다.

입주자를 책임 지원하지 않는 생활지도원이 조금 더 할 수 없을까요? 비가구직이 얼마쯤 보충해 줄 수 없을까요? 주택 구조 변경 또는 카메라 활용으로 야간 근무자를 줄일 수 없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기회비용을 헤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 야간 근무 횟수를 줄여서 주간에 입주자의 삶을 개별 지원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3) 입주자의 생활 흐름 곧 요일별 시간대별 지원 수요에 맞추어 생활지도원을 배치합니다.

2. 유연한 근로시간제

입주자 지원 수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참조 : <http://welfare.or.kr> [근무제](#) 연구자료

1) 일반 사업장은 대개 매주 매일 근무시간이 일정하고 그 일정한 근무시간에 맞추어 일을 보지만 복지시설은 아주 다릅니다.

입주자의 생활이라는 게, 여느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바쁜 주나 날이 있고 한가한 주나 날도 있습니다. 당직자 외에 누군가 더 일찍 와서 챙기거나 더 늦게까지 지원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 날 동행해야 하는 일도 생깁니다.

2) 일정한 시각에 출퇴근하는 일반 근로시간제라면 입주자가 자기 생활을 직원 근무시간에 맞추어 조정 조절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나 사회 활동, 취미나 여가 활동 따위를 직원에게 맞추거나 포기하는 일이 유연한 근로시간제보다 많을 겁니다. 요일별 시간대별 지원 수요와 무관하게 일정한 근무 유형을 적용하거나 직원 편의에 따라 근무를 편성한다면 더 그럴 겁니다.

3) 얼마쯤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입주자 지원 수요에 맞추어 각주 각일의 근로시간과 각일의 출퇴근시각을 선택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시간제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요?

4) 일반 근로시간제에서도 연장근로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늦게까지 지원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출근 시각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연장근로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일찍 와서 지원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일찍 퇴근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 수요가 많은 주나 날에 연장근로를 많이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지원 수요가 적은 주나 날의 근로시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예시

제1조(목적) 이 합의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와 취업규칙 제○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생활지도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산기간)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총 근로시간) 40시간 ÷ 7일 × 해당 월의 역일로 한다.

제5조(표준근로시간) 1일의 표준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제6조(의무시간대와 선택시간대) 근무조마다 합의 조정하되, 월별로 각자 출퇴근시각을 선택하여 전월 25일까지 보고한다. 특정일에 그 시각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보고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시설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활지도원을 신뢰한다면 의무시간대나 선택시간대를 정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기술합니다.

① 초근은 7:00~9:00에 시작하고, 만근은 17:00~22:00에 마친다.

주야 교대라면, 주간은 7:00~9:00에 시작하고 17:00~22:00에 마친다.

② 야근은 17:00~22:00에 시작하고 7:00~10:00에 마친다.

제7조(가산수당) 제4조의 총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보조금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2019년 8월 1일부터 1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 후 1년간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또한 같다.

2019년 7월 1일

시설장 _____(인) 근로자 대표 _____(인)

3. 근무표 프로그램

매월 근무표 작성과 근로시간 계산을 간단히 할 수 없을까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정산하거나 시간외수당 지급 대상 시수를 월 40시간에 맞추는 일을 간단히 할 수 없을까요?

생활지도원이 자기 일정을 계획 선택 약속할 수 없을까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http://welfare.or.kr> [근무표](#)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엑셀 2010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식 100% 공개, 암호 없습니다. 필요한 대로 복사 변경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간 근무표를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근무가 무엇인지, 특정일의 근무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생활지도원도 저마다 자기 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월간 근무표에 의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해 주고, 이를 종합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 시수로 환산해 줍니다. 휴일 근로시간 계산을 위해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일일 연장근로명령서, 개인별 월간 연장근로대장을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4) 여러 근무팀 또는 모든 직원의 월간 근무표 및 연장근로명령서가 하나의 시트에 일목요연하게 통합됩니다.

5) 자동으로 생성되는 월간 근무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를 바꾸거나 휴가를 넣거나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는 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재계산해 주고, 근무표종합시트 및 연장근로명령서 시트의 내용도 자동으로 갱신해 줍니다.

4.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1) 연장근로시간

① 일반 근로시간제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정산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중 큰 값이 그 주차의 연장근로시간입니다.

매월 1일부터 28일까지 7일씩 1주 단위로 정산하고 5주차인 29일 30일 31일은 1일 단위로 정산합니다.

※ 이 정산 방식에 대해 2017년 8월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했고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및 상담전화 1350 상담원과 통화하여 거듭 확인했습니다.

월간 연장근로시간은 주별 연장근로의 월간 합계입니다.

② 일반근로시간제의 일일 연장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보다 많으면 그 시간을 그 주차의 근무 횟수로 나눈 시간이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보다 많으면 당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입니다.

단, 토요일이 주휴일이고 일요일과 공휴일이 휴일인 사무직은 5주차(29일 30일 31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로한 시간을 모두 연장근로시간으로 산입합니다. 예컨대 29일이 일요일이고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8시간 모두 연장근로시간입니다.

※ <http://welfare.or.kr>에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는 수식을 달리하여 모두 여덟 가지 유형의 근무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③ 유연한 근로시간제에서 월간 연장근로시간은 월간 기준근로시간 (30일이면 171.43시간, 31일이면 177.1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입니다.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일일 연장근로시간은 월간 연장근로시간을 월간 근무 횟수로 나눈 시간입니다.

※ 유연한 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시간을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명령은 반드시 정산기간의 기준근로시간을 다 채운 다음에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월중 근무일에 분산하여 명령할 수 있습니다.

2017년 2월 9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 문의하여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화 답변이지만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일반근로시간제에서도 이와 같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보다 많은 주의 연장근로시간을 주중 근무일에 분산합니다.

2) 야간근로시간

22:00~06:00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입니다.

3) 휴일근로시간

근무표종합 시트에서 공휴일의 요일을 ‘휴’로 바꾸면 각 근무조 시트에서 휴일근로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5월 1일은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휴일로 계산해 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0.>

※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면 2020년 1월 1일부터, 30명 이상 300명 미만이면 2021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명 미만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5. 시간외근무수당

1) 시간외근무수당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① 연장근로 1시간 가산 임금 : 연장 1시간 임금으로 기본 시급의 100% + 연장근로수당으로 기본 시급의 50% = 기본 시급의 150%

② 야간근로 1시간 가산 임금 = 야간근로수당으로 기본 시급의 50%

③ 휴일근로 1시간 가산 임금 = 휴일근로수당으로 기본 시급의 150%

※ 야간근로 시간은 기본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은 따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인 직원의 가산 임금은 연장근로는 1시간당 15,000원, 야간근로는 1시간당 5,000원, 휴일근로는 1시간당 15,000원이고, 시간외근무수당은 1시수당 15,000원입니다.

2)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시수

시간외근무수당은 1시수당 기본 시급의 150%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1시간의 가산 임금과 같고, 야간근로 3시간의 가산 임금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시수는 “연장근로시간 + 휴일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3” 시간입니다.

3) 이 시간이 너무 적거나 많으면 근무유형별 출퇴근 시각을 조정하여 실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편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적거나 많으면,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① 많으면 이번 달 일일근로시간 표에서 근로시간을 줄입니다. 또는 다음 달에 150%의 시간을 보상휴가로 주되, 별도 수기로 보상휴가를 줍니다. 엑셀에서 다음 달 근무표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② 적으면, 그리고 40시간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기 원하면, 이번 달에 근무를 추가하거나 일일근로시간을 추가합니다.

제5장. 인력

생활지도원이 근무 시간에 지원해야 하는 입주자가 너무 많습니다.

최소한의 케어와 보호 통제, 집단 활동 프로그램 외에 개별 지원까지 할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 입주자를 일일이 돌아볼 겨를이 없고, 다른 직원이 맡은 입주자의 일에 적극 나서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입주자가 저마다 각각 자기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지역사회 어느 사람이 이용하는 일반 복지 수단을 이용하며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렵습니다. 사람 구실을 하며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어렵다는 말이고 인권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직원이 직접 입주자의 복지를 이루어 주는 방식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니 직원 외에 다른 사람이 함께하여 입주자를 개별 지원하게 주선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입주자의 돌레 사람, 입주자 개인별 맞춤 지원 조직, 입주자 개인별 맞춤 실습생이 함께하게 주선하는 겁니다.

돌레 사람이나 맞춤 지원 조직 회원에게 부탁할 때는

첫째, 일상생활에서 하는 김에 같이 하거나 조금 더하게 부탁합니다.

운동 산책하러 갈 때, 미용실 목욕탕 찜질방 갈 때, 시장 백화점 갈 때, 공연 영화 보러 갈 때, 학원 문화센터 도서관 갈 때, 놀러 갈 때, 구경 갈 때, 뭐 먹으러 갈 때, 투표하러 갈 때, 지역행사에 참여할 때, 교회 학교 직장 갈 때, 가는 김에 같이 가고 하는 김에 같이 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둘째,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합니다.

그래야 평안하고 오래갑니다.

1. 돌레 사람

1) 개념

당사자의 인간관계나 일상생활로 자연스럽게 접촉 상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좁게는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이고, 넓게는 이용하는 이용하면 좋을 복지수단에 관련된 사람까지 아우릅니다.

그 밖의 사람에게 하는 부탁은 동냥하는 꼴이기 쉽습니다. 그 밖의 사람이 도울 때는 흔히 당사자를 불쌍한 사람 따위로 구차하게 대상화하여 후원 봉사한다 합니다. 이리므로 그 밖의 사람에게라도 부탁해야 한다면,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신중히 입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2) 돌레 사람 확인

가족을 비롯하여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 인사합니다. 당사자가 이용하는 복지수단에 관련된 사람까지 찾아가 인사합니다. 여의치 않으면 우선 전화라도 합니다.

인사하다 보면 ‘사람’을 알게 됩니다. 함께할 일이 보이고 살려 쓸 강점이 보입니다. 잘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3) 돌레 사람 확장

① 신앙생활 : 종교기관에 교인으로 등록하고 그곳의 집회와 행사, 부서 활동, 구역 활동, 소그룹 활동, 봉사 활동에 함께하게 돕습니다.

② 취미생활 : 학원 문화센터 평생학습기관 동호회 공방 당구장 볼링장 수영장 따위의 일반 수단을 이용하여 취미활동하게 돕습니다.

③ 직장생활 : 시설 밖 여느 사람이 일하는 일터에서 일하게 돕습니다. 연수 회식 애경사에 함께하게 돕습니다. 시간제 일자리가 좋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자연스럽게 돌레 사람이 생기고 돌레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2. 입주자 개인별 맞춤 지원 조직

이렇게하면 ‘철수회’를 만드는 겁니다.

1) 철수 씨와 의논하고 함께 회원을 모집합니다.

① 기존 봉사자 가운데 철수 씨와 잘 맞는 사람을 영입합니다.

②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김에 함께하고 가는 김에 같이 갈 만한 사람을 위주로 추가 모집합니다.

식사 목욕 산책 운동 쇼핑 요리 등산 여행 외박 신앙 취미 직업 공부 같은 과업별로 또는 요일별로 도움이 필요한 만큼 모집합니다.

이런 과업을 회원과 함께 나가서 일반 복지수단으로써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둘레 사람이 생깁니다. 신앙 취미 직업이 특히 그러합니다.

2) 철수 씨와 함께 ‘철수 씨 지원 안내서’를 회원에게 설명합니다.

회원은 도우면서 발견하는 철수 씨의 강점, 철수 씨에게 잘 맞는 환경 요소, 새로 터득하는 지원 방법 같은 정보를 기록합니다.

이로써 때때로 지원 안내서를 수정 보완해 갑니다.

3) 여의치 않으면 우선 집 단위로 적용해 봅니다. 호별 맞춤 지원 조직과 함께하는 겁니다.

일종의 가구별 봉사단입니다. 가구에 공통으로 필요한 일이 있고 시설 봉사자 가운데 단체 사람들도 있으니 가구별 봉사단을 조직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해당 가구의 입주자들과 의논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하고 함께합니다.

3. 입주자 개인별 전담 실습생

실습생 한두 명이 특정 입주자 한 명을 전담하여 또는 특정 입주자의 생활 과업 한두 가지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겁니다.

여의치 않으면 우선 집 단위로 적용해 봅니다. 호별 전담 실습생을 모집하여 해당 집의 구성원들과 함께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시설 단기사회사업이라 합니다.

단기사회사업은 사회복지현장실습생이 단기간 수행하는 사회사업입니다. 참조 : 복지요결 '단기사회사업' 편

1) 단기사회사업의 목적

① 실무 지원

하고 싶은데, 해야 하는데, 인력이나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제대로 충분히 못하고 있는 사업을 대학생들이 한두 가지씩 맡아서 실무자 지도하에 기획부터 평가까지 진행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며 뜻있게 재미있게 일하는 방식, 그로써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세워 가는 모습이 실무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② 인재 양성

좋은 학생들을 찾아 사회사업하는 의미와 재미를 경험하게 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사는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경험함으로써 사회사업이 얼마나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인지 실감하면 현장에 헌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단기사회사업의 과정

① 입주자들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단기사회사업으로 할 만한 일을 선정 또는 구상해 봅니다.

생활재활교사들을 대상으로 과업을 공모하거나 개별 접촉하여 단위 과업 한두 가지 선정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사업 제안서를 만들어 이렇게 해 보자고 권하기도 합니다.

② 홍보 : 선정한 과업을 실습생 모집 안내문에 예시하고 그 가운데 실습 지망 과업을 택하여 지원하게 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이나 특강 시간에 사례를 발표하고 방학에 이런 사회사업을 함께 해 보자 합니다.

③ 지원서 지도 : 지원서를 쓰는 일이 학생에게 유익하도록 지도합니다. 탈락자 서류는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감사 축복하는 편지를 씁니다. 참조 : 복지야성 대학생 편 '자기소개서'

④ 면접 : 당사자가 면접을 준비 진행하게 추천합니다. 지원자가 면접으로 사회사업을 배우고 당사자와 어울리고 지역사회를 누리게 합니다. 탈락자 서류는 반환 폐기하고 감사 축복하는 편지를 씁니다. 면접까지 합격하면 격려 글을 받게 합니다. 참조 : 복지야성 대학생 편 '격려 글'

⑤ 연수 : 복지요결과 실천 사례를 공부하고 사업 실행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사회복지정보원의 '실습 합동연수'에 참가하면 좋습니다.

⑥ 실무 :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함으로 시작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감사함으로 마칩니다.

⑦ 평가와 수료 : 추억 사례 배움 강점 희망 감사를 나눕니다. 수료사를 낭독하고 수료증을 줍니다. 참조 : 복지요결 '실리 평가, 감사 평가'

⑧ 보고서 : 기관과 입주자에게 허락을 받고, 출판사에 원고를 보냅니다. 도서등록번호를 받아 인쇄합니다. 참조 : 복지요결 '책 만들기'

제6장.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

집중 지원 또는 고난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가 있습니다.

정신·신체 기능이 심하게 손상·결여된 입주자에 대한 케어나 수발, 자해 폭력 파손 소란 배회 발작 따위의 이른바 이상행동이나 도전행동이 심한 입주자에 대한 케어나 치료, 어찌하면 좋을까요?

의사소통은 안 되고,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고, 한 명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할 일은 많고, 도와줄 만한 돌레 사람도 없고 사람들은 꺼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 보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거나 오히려 문제가 커지거나 굳어지거나 교묘해지고, 달리 뵈족한 수가 보이지 않고, 누가 다루어도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1. 사회사업적 접근

1) 판전

문제만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당사자도 힘들 겁니다. 사회사업가도 지쳐서 소진되거나 타성에 젖을 겁니다.

당사자도 사회사업가도 탈출 환기 충전이 필요합니다. 잠시라도 이 괴로운 굴레에서 벗어나 숨 쉬고 즐기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다른 판, 판전이 필요합니다.

① 이런 문제는 건드리면 덧나기 쉽습니다. 대응할수록 커지거나 다져지거나 교묘해지기도 합니다.

누가 다루어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붙들고 씨름해 봤자 해결하지 못한 채 애매히 강박이나 무력감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이런 문제는 모르는 척하고 짐짓 문제와 상관없어 보이는 일, 좋아하는 일, 재미있는 일을 벌여서 그 힘으로 문제를 희석 상쇄하거나 감당 극복 초월하게 돕는 편이 좋습니다.

② 문제와 사람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낙인 눈총 구박 미움 잔소리 멸시 천대를 받아왔을지 모릅니다.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시달렸을지 모릅니다. 받은 관심(?)이나 개입이 이미 족할지 모릅니다. 숨 쉴 곳조차 없을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에게 또 문제를 보고 덤벼들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회사업가의 처지나 역량으로 어찌겠습니까?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어제도 오늘도 문제만 이야기하고 문제만 다루면 당사자도 가족도 힘듭니다.

문제 나뉘고 다루기 나뉘이지만 두렵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보고 다른 면도 봐 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점을 찾아 기뻐하거나 칭찬 감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강점 가능성을 찾고 잘할 만한 일 좋은 일을 찾아 귀하게 세워 주면 좋겠습니다.

그로써 문제를 희석 상쇄하거나 문제가 있어도 살아갈 만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2) 분산

많은 입주자가 몰려 사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거의 매일 하루 종일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지내야 한다면, 사실상 강요된 일과나 시간표에 따라 단체 생활이 일상화한 곳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밀집 주거, 고정 주거, 단체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정서불안 짜증 소란 탐욕 도벽 배회 발작 자해 폭력 다툼 파손 같은 문제가 생기거나 불거지거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 단위를 세분하고 주거와 활동을 분산합니다.

① 생활 단위를 세분합니다.

동이나 층마다, 집이나 방마다, 입주자마다, 각각 독립 가구로 따로 생활하게 돕습니다. 집단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② 주거를 분산하고 활동을 분산합니다.

때때로 다른 곳에서 하루나 이틀 또는 며칠씩 지내다 오면, 입주자 개 개인의 바깥 사회 활동이 있으면, '다른 입주자 몇 명이라도' 그렇게 다양한 주거와 사회 활동으로 밖에 나가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요?

할 수 있겠다 싶은 입주자부터, 할 수 있겠다 싶은 일부터 해 봅니다. 차츰 더 어려운 입주자, 더 어려운 일까지 감당할 마음과 힘과 여지가 생길 겁니다.

※ 주거 지원

주거는 어떤 곳에 머물러 지내는 생활입니다.

주거 지원은 주로 시설 밖 주거를 돕는 일입니다.

당사자의 욕구와 역량, 인간관계와 사회 활동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 1) 원외 가구 거주 : 시설이 밖에 마련한 주택에 거주합니다.
- 2) 외박 : 때때로 시설 아닌 곳에서 하루 이틀이나 며칠 지내다 옵니다. 명분과 기회, 횟수와 기간을 늘려 갑니다.
- 3) 터부살이 : 결연 가정이나 위탁 가정 또는 친지 가정에서 지냅니다.
- 4) 판살림 : 좋은 집주인, 좋은 이웃이 있는 곳에서 자취합니다. 시설이 책임지고 지원합니다. 집주인이나 이웃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돕습니다.
- 5) 본가살이 : 본래 살던 집이나 가족의 집에 거주합니다. 시설이 책임지고 지원합니다. 가족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돕습니다.

기타 : 1~2주쯤의 자취나 본가살이를 지원하는 단기사회사업, 둘레 사람이 시설에 하루 이틀 묵거나 상당 기간 동거하게 돕는 역 주거 지원

시설과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입주자는 시설 밖에서도 일상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시설로 돌아오거나 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거를 지원하면 입주자의 삶이 풍성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주거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질적으로 아주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 약자일수록 더욱

약자일수록 더 예를 갖추어 더 정성스럽게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합니다.

이상행동이나 도전행동이 심한 사람,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1) 예를 갖추어 정성스럽게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압니다. 오래 도움을 받다 보면 느느니 눈치이고 약자일수록 더 예민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2) 사회사업가의 언행이 약자의 언행에 미치는 영향이 큼니다. 특히 지적 약자 시설에서는 사회사업가의 언행이 입주자에게 곧잘 복사됩니다.

3) 사회사업가의 언행이 약자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큼니다. 예를 갖추어 정성스럽게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사람들이 당사자를 귀하게 대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참조 : 복지야성 시설 편 '복장'

4) 예를 갖추어 정성스럽게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다 보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됩니다. 그 마음에서 좋은 기운이 나옵니다. 그 기운이 사람을 움직이고 일을 이룹니다.

이러므로 약자일수록 더 예를 갖추어 더 정성스럽게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합니다.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의사소통 방식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그 사람에게 맞는 의사소통 수단을 두루 탐색 적용해 봅니다.

2. 기술적 접근

1) 문헌을 두루 살피다 보면 시도해 볼 만한 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① (환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케어 기술

“이 책은 환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간호’와는 달리, 케어 받는 사람을 생활의 주체로 보고 식사, 배설, 목욕 등의 기본 생활행동부터 반신불수·치매 등의 응용 생활까지 생활의 관점에서 케어의 지식과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사 케어에서는 단순한 식사 수발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식사를 위한 식사자세와 환경을 인식시키고, 배설 케어에서는 정상적인 배설을 위한 배설 습관들이기, 목욕 케어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이용한 목욕 방법 등을 소개한다.

또한, 응용 케어 편에서는 먼저 어떤 장애와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 유형별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나아가 케어하는 사람의 건강까지 돌볼 수 있는, 케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간단 체조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재활병원, 요양기관, 너싱홈 등의 케어 현장에서 수십 년간 일해서 얻은 체계화된 전문가의 케어 기술 노하우를 소개한다.

케어 현장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데이터화하여 체계화하고, 현장에서서의 실천을 통해 얻은 최신 이론과 기술을 알기 쉽게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있어, 초보자도 하나하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케어를 하다가 곤란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도 상황에 맞춰 찾아보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병원·너싱홈·가정 등의 실제 케어 현장에서 케어 기술을 익히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다.”

출처 : [에스24](#)가 소개한 출판사 리뷰에서 발췌했습니다.

② 문제행동치료의 표준지침 및 치료 **매뉴얼**, 국립정신건강센터

문제행동의 원인 찾기, 환경개선을 통한 문제행동 대처법, 문제행동의 치료, 문제행동 응급대처법을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포부와 자만심으로 시작한 첫 만남에서,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나를 철저히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5살 박이 WJ가 생각한다.

묶여 있는 냉장고, 너털거리던 찬장 문, 여기저기 얼룩진 카펫에 덩그러니 놓여 있던 부서진 가구들. 그리고 억지로 웃음짓던 지쳐가는 WJ 부모님의 얼굴. 충격이었고 도전이었다.

그리고 배우면서 싸우면서 진심으로 노력했던 시간들, 초보 치료자인 내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는 결과는 다소 통제된 WJ의 행동과, 동시에 내가 보상으로 줬던 그 많은 과자와 사과로 무겁게 커 버린 WJ. 몰라서 힘든 시간들이었다.

WJ는 내게 풀어야 할 숙제를 주었고, 그리고 다행스럽게, 운이 좋게 나는 답을 찾는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응용행동분석은 문제행동에 대한 명쾌한 설명과, 다시 배우기를 통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내가 일했던 Johns Hopkins대학 부설 Kenney Krieger Institute에서는 그 이론이 어떻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내게 확신을 주었다. 그리고 연구와 임상에서 스스로 경험하며 나는 매일 희망을 쌓고 있다.

이 매뉴얼은 이제까지 경험과 지식의 모음이다.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정리된 것들을 토대로 했기에 이것만큼 손쉽게 정리된 것이 없음에 자부심을 느낀다.” 책 머리말에서 발췌

2) 둘레 사람, 전임자, 경험자, 전문가에게 두루 묻고 의논하다 보면 얼마쯤 도움이 될 만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얼마쯤 해결한 사례가 있을지 모릅니다. 똑같은 사례는 아니어도 유용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3. 영성적 접근

감수합니다.

내일 또 내일 이어질 괴로움까지 기꺼이 받아들이며 갈 데까지 가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고뇌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릴 일이 있음을 사회사업가 이기에 오히려 복으로 여기고 감내하는 겁니다.

참조 : 복지영성 '눈물 흘릴 일이 있는 사회사업가'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며 자기 삶을 살게, 사람 구실을 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도 이렇게 도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그래도 살아 있는 한 사람답고 사람 사는 것 같게,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 보게 돕고 싶습니다. 더디고 힘들지라도, 잘못되어 비난 징계 형벌을 받게 될지라도...

믿음과 희망을 굳게 붙잡고 싶습니다.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